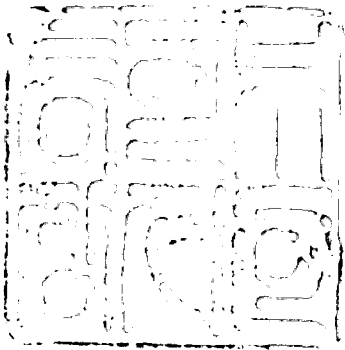


□□□□
2002
□□□□

북한수첩



통일부

CALENDAR

2002

<p>4 APRIL</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S</td><td>M</td><td>T</td><td>W</td><td>T</td><td>F</td><td>S</td></tr> <tr><td></td><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r> <tr><td>7</td><td>8</td><td>9</td><td>10</td><td>11</td><td>12</td><td>13</td></tr> <tr><td>14</td><td>15</td><td>16</td><td>17</td><td>18</td><td>19</td><td>20</td></tr> <tr><td>21</td><td>22</td><td>23</td><td>24</td><td>25</td><td>26</td><td>27</td></tr> <tr><td>28</td><td>29</td><td>30</td><td></td><td></td><td></td><td></td></tr> </tabl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p>5 MAY</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S</td><td>M</td><td>T</td><td>W</td><td>T</td><td>F</td><td>S</td></tr> <tr><td></td><td></td><td></td><td>1</td><td>2</td><td>3</td><td>4</td></tr> <tr><td>5</td><td>6</td><td>7</td><td>8</td><td>9</td><td>10</td><td>11</td></tr> <tr><td>12</td><td>13</td><td>14</td><td>15</td><td>16</td><td>17</td><td>18</td></tr> <tr><td>19</td><td>20</td><td>21</td><td>22</td><td>23</td><td>24</td><td>25</td></tr> <tr><td>26</td><td>27</td><td>28</td><td>29</td><td>30</td><td>31</td><td></td></tr> </tabl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p>6 JUNE</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S</td><td>M</td><td>T</td><td>W</td><td>T</td><td>F</td><td>S</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1</td></tr> <tr><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r> <tr><td>9</td><td>10</td><td>11</td><td>12</td><td>13</td><td>14</td><td>15</td></tr> <tr><td>16</td><td>17</td><td>18</td><td>19</td><td>20</td><td>21</td><td>22</td></tr> <tr><td>23</td><td>24</td><td>25</td><td>26</td><td>27</td><td>28</td><td>29</td></tr> </tabl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p>7 JULY</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S</td><td>M</td><td>T</td><td>W</td><td>T</td><td>F</td><td>S</td></tr> <tr><td></td><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r> <tr><td>7</td><td>8</td><td>9</td><td>10</td><td>11</td><td>12</td><td>13</td></tr> <tr><td>14</td><td>15</td><td>16</td><td>17</td><td>18</td><td>19</td><td>20</td></tr> <tr><td>21</td><td>22</td><td>23</td><td>24</td><td>25</td><td>26</td><td>27</td></tr> <tr><td>28</td><td>29</td><td>30</td><td>31</td><td></td><td></td><td></td></tr> </tabl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p>8 AUGUST</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S</td><td>M</td><td>T</td><td>W</td><td>T</td><td>F</td><td>S</td></tr> <tr><td></td><td></td><td></td><td></td><td>1</td><td>2</td><td>3</td></tr> <tr><td>4</td><td>5</td><td>6</td><td>7</td><td>8</td><td>9</td><td>10</td></tr> <tr><td>11</td><td>12</td><td>13</td><td>14</td><td>15</td><td>16</td><td>17</td></tr> <tr><td>18</td><td>19</td><td>20</td><td>21</td><td>22</td><td>23</td><td>24</td></tr> <tr><td>25</td><td>26</td><td>27</td><td>28</td><td>29</td><td>30</td><td>31</td></tr> </tabl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p>9 SEPTEMBER</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S</td><td>M</td><td>T</td><td>W</td><td>T</td><td>F</td><td>S</td></tr> <tr><td></td><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r> <tr><td>7</td><td>8</td><td>9</td><td>10</td><td>11</td><td>12</td><td>13</td></tr> <tr><td>14</td><td>15</td><td>16</td><td>17</td><td>18</td><td>19</td><td>20</td></tr> <tr><td>21</td><td>22</td><td>23</td><td>24</td><td>25</td><td>26</td><td>27</td></tr> <tr><td>28</td><td>29</td><td>30</td><td></td><td></td><td></td><td></td></tr> </tabl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p>10 OCTOBER</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S</td><td>M</td><td>T</td><td>W</td><td>T</td><td>F</td><td>S</td></tr> <tr><td></td><td></td><td>1</td><td>2</td><td>3</td><td>4</td><td>5</td></tr> <tr><td>6</td><td>7</td><td>8</td><td>9</td><td>10</td><td>11</td><td>12</td></tr> <tr><td>13</td><td>14</td><td>15</td><td>16</td><td>17</td><td>18</td><td>19</td></tr> <tr><td>20</td><td>21</td><td>22</td><td>23</td><td>24</td><td>25</td><td>26</td></tr> <tr><td>27</td><td>28</td><td>29</td><td>30</td><td>31</td><td></td><td></td></tr> </tabl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p>11 NOVEMBER</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S</td><td>M</td><td>T</td><td>W</td><td>T</td><td>F</td><td>S</td></tr> <tr><td></td><td></td><td></td><td></td><td></td><td>1</td><td>2</td></tr> <tr><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d>9</td></tr> <tr><td>10</td><td>11</td><td>12</td><td>13</td><td>14</td><td>15</td><td>16</td></tr> <tr><td>17</td><td>18</td><td>19</td><td>20</td><td>21</td><td>22</td><td>23</td></tr> <tr><td>24</td><td>25</td><td>26</td><td>27</td><td>28</td><td>29</td><td>30</td></tr> </tabl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p>12 DECEMBER</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S</td><td>M</td><td>T</td><td>W</td><td>T</td><td>F</td><td>S</td></tr> <tr><td></td><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r> <tr><td>7</td><td>8</td><td>9</td><td>10</td><td>11</td><td>12</td><td>13</td></tr> <tr><td>14</td><td>15</td><td>16</td><td>17</td><td>18</td><td>19</td><td>20</td></tr> <tr><td>21</td><td>22</td><td>23</td><td>24</td><td>25</td><td>26</td><td>27</td></tr> <tr><td>28</td><td>29</td><td>30</td><td>31</td><td></td><td></td><td></td></tr> </tabl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03

<p>1 JANUARY</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S</td><td>M</td><td>T</td><td>W</td><td>T</td><td>F</td><td>S</td></tr> <tr><td></td><td></td><td>1</td><td>2</td><td>3</td><td>4</td><td></td></tr> <tr><td>5</td><td>6</td><td>7</td><td>8</td><td>9</td><td>10</td><td>11</td></tr> <tr><td>12</td><td>13</td><td>14</td><td>15</td><td>16</td><td>17</td><td>18</td></tr> <tr><td>19</td><td>20</td><td>21</td><td>22</td><td>23</td><td>24</td><td>25</td></tr> <tr><td>26</td><td>27</td><td>28</td><td>29</td><td>30</td><td>31</td><td></td></tr> </tabl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p>2 FEBRUARY</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S</td><td>M</td><td>T</td><td>W</td><td>T</td><td>F</td><td>S</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1</td></tr> <tr><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r> <tr><td>9</td><td>10</td><td>11</td><td>12</td><td>13</td><td>14</td><td>15</td></tr> <tr><td>16</td><td>17</td><td>18</td><td>19</td><td>20</td><td>21</td><td>22</td></tr> <tr><td>23</td><td>24</td><td>25</td><td>26</td><td>27</td><td>28</td><td></td></tr> </tabl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p>3 MARCH</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S</td><td>M</td><td>T</td><td>W</td><td>T</td><td>F</td><td>S</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1</td></tr> <tr><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r> <tr><td>9</td><td>10</td><td>11</td><td>12</td><td>13</td><td>14</td><td>15</td></tr> <tr><td>16</td><td>17</td><td>18</td><td>19</td><td>20</td><td>21</td><td>22</td></tr> <tr><td>23</td><td>24</td><td>25</td><td>26</td><td>27</td><td>28</td><td>29</td></tr> <tr><td>30</td><td>31</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p>4 APRIL</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S</td><td>M</td><td>T</td><td>W</td><td>T</td><td>F</td><td>S</td></tr> <tr><td></td><td>1</td><td>2</td><td>3</td><td>4</td><td>5</td><td></td></tr> <tr><td>6</td><td>7</td><td>8</td><td>9</td><td>10</td><td>11</td><td>12</td></tr> <tr><td>13</td><td>14</td><td>15</td><td>16</td><td>17</td><td>18</td><td>19</td></tr> <tr><td>20</td><td>21</td><td>22</td><td>23</td><td>24</td><td>25</td><td>26</td></tr> <tr><td>27</td><td>28</td><td>29</td><td>30</td><td></td><td></td><td></td></tr> </tabl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p>5 MAY</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S</td><td>M</td><td>T</td><td>W</td><td>T</td><td>F</td><td>S</td></tr> <tr><td></td><td></td><td></td><td></td><td>1</td><td>2</td><td>3</td></tr> <tr><td>4</td><td>5</td><td>6</td><td>7</td><td>8</td><td>9</td><td>10</td></tr> <tr><td>11</td><td>12</td><td>13</td><td>14</td><td>15</td><td>16</td><td>17</td></tr> <tr><td>18</td><td>19</td><td>20</td><td>21</td><td>22</td><td>23</td><td>24</td></tr> <tr><td>25</td><td>26</td><td>27</td><td>28</td><td>29</td><td>30</td><td>31</td></tr> </tabl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p>6 JUNE</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S</td><td>M</td><td>T</td><td>W</td><td>T</td><td>F</td><td>S</td></tr> <tr><td></td><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r> <tr><td>7</td><td>8</td><td>9</td><td>10</td><td>11</td><td>12</td><td>13</td></tr> <tr><td>14</td><td>15</td><td>16</td><td>17</td><td>18</td><td>19</td><td>20</td></tr> <tr><td>21</td><td>22</td><td>23</td><td>24</td><td>25</td><td>26</td><td>27</td></tr> <tr><td>28</td><td>29</td><td>30</td><td></td><td></td><td></td><td></td></tr> </tabl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p>7 JULY</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S</td><td>M</td><td>T</td><td>W</td><td>T</td><td>F</td><td>S</td></tr> <tr><td></td><td>1</td><td>2</td><td>3</td><td>4</td><td>5</td><td></td></tr> <tr><td>6</td><td>7</td><td>8</td><td>9</td><td>10</td><td>11</td><td>12</td></tr> <tr><td>13</td><td>14</td><td>15</td><td>16</td><td>17</td><td>18</td><td>19</td></tr> <tr><td>20</td><td>21</td><td>22</td><td>23</td><td>24</td><td>25</td><td>26</td></tr> <tr><td>27</td><td>28</td><td>29</td><td>30</td><td>31</td><td></td><td></td></tr> </tabl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p>8 AUGUST</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S</td><td>M</td><td>T</td><td>W</td><td>T</td><td>F</td><td>S</td></tr> <tr><td></td><td></td><td></td><td></td><td></td><td>1</td><td>2</td></tr> <tr><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d>9</td></tr> <tr><td>10</td><td>11</td><td>12</td><td>13</td><td>14</td><td>15</td><td>16</td></tr> <tr><td>17</td><td>18</td><td>19</td><td>20</td><td>21</td><td>22</td><td>23</td></tr> <tr><td>24</td><td>25</td><td>26</td><td>27</td><td>28</td><td>29</td><td>30</td></tr> </tabl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p>9 SEPTEMBER</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S</td><td>M</td><td>T</td><td>W</td><td>T</td><td>F</td><td>S</td></tr> <tr><td></td><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r> <tr><td>7</td><td>8</td><td>9</td><td>10</td><td>11</td><td>12</td><td>13</td></tr> <tr><td>14</td><td>15</td><td>16</td><td>17</td><td>18</td><td>19</td><td>20</td></tr> <tr><td>21</td><td>22</td><td>23</td><td>24</td><td>25</td><td>26</td><td>27</td></tr> <tr><td>28</td><td>29</td><td>30</td><td></td><td></td><td></td><td></td></tr> </tabl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p>10 OCTOBER</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S</td><td>M</td><td>T</td><td>W</td><td>T</td><td>F</td><td>S</td></tr> <tr><td></td><td></td><td>1</td><td>2</td><td>3</td><td>4</td><td></td></tr> <tr><td>5</td><td>6</td><td>7</td><td>8</td><td>9</td><td>10</td><td>11</td></tr> <tr><td>12</td><td>13</td><td>14</td><td>15</td><td>16</td><td>17</td><td>18</td></tr> <tr><td>19</td><td>20</td><td>21</td><td>22</td><td>23</td><td>24</td><td>25</td></tr> <tr><td>26</td><td>27</td><td>28</td><td>29</td><td>30</td><td>31</td><td></td></tr> </tabl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p>11 NOVEMBER</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S</td><td>M</td><td>T</td><td>W</td><td>T</td><td>F</td><td>S</td></tr> <tr><td></td><td></td><td></td><td></td><td></td><td>1</td><td></td></tr> <tr><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r> <tr><td>9</td><td>10</td><td>11</td><td>12</td><td>13</td><td>14</td><td>15</td></tr> <tr><td>16</td><td>17</td><td>18</td><td>19</td><td>20</td><td>21</td><td>22</td></tr> <tr><td>23</td><td>24</td><td>25</td><td>26</td><td>27</td><td>28</td><td>29</td></tr> </tabl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p>12 DECEMBER</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S</td><td>M</td><td>T</td><td>W</td><td>T</td><td>F</td><td>S</td></tr> <tr><td></td><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r> <tr><td>7</td><td>8</td><td>9</td><td>10</td><td>11</td><td>12</td><td>13</td></tr> <tr><td>14</td><td>15</td><td>16</td><td>17</td><td>18</td><td>19</td><td>20</td></tr> <tr><td>21</td><td>22</td><td>23</td><td>24</td><td>25</td><td>26</td><td>27</td></tr> <tr><td>28</td><td>29</td><td>30</td><td>31</td><td></td><td></td><td></td></tr> </tabl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일리두기

1. 이 수첩은 북한관련 기본 자료를 활용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2. 통계자료는 원칙적으로 2001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북한원문을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안에 넣었으며, 그 외에는 우리의 한글맞춤법에 따랐습니다.

차례

I. 개 왕

- 주요 현황 11
- 행정구역 12
- 약 사 14

II. 정 치

- 체제의 성격 21
- 주체사상 21
- 새로운 정치이념 23
- 권력체제도 24
- 조선노동당 25
- 입법기관 31
- 행정기관 34
- 사법기관 36

III. 외 교

- 외교정책 기초 39
- 외교정책 변천과정 39
- 조직 및 기능 40
- 수교국 현황 41
- 공관 현황 42

- 북미관계 일지 44
- 북일관계 일지 45

IV. 군 사

- 군사정책 기초 49
- 조직 및 기능 50
- 군사력 현황 52
- 군사비 추이 53
- 미사일 개발 및 제원 54
- 핵문제 관련 주요동향 일지 55

V. 경 제

- 경제체제 및 정책 61
- 경제관리방법 및 경제구호 61
- 경제계획의 목표 62
- 최근 경제시책 방향 63
- 주요 경제지표 변화추이 64
- 재정의 특징과 규모 65
- 사회간접자본 실태 66
- 식량·비료 수급 실태 67
- 농민시장 69
- 대외무역 동향 70

VI. 사회·문화

- 주민 통제 75
- 주민의식 변화 동향 76
- 주민 사상교육 강화 76
- 주민성분 분류(3계층 51부류) 77
- 계층별 주택배당 78
- 계층별 임금수준 79
- 교육체계 및 교과과정 80
- 보건·의료정책 및 시설 82
- 출판·보도 현황 83
- 명 절 85
- 주요 도시 86

VII. 대 남

- 통일의 원칙 91
- 연방제 통일방안의 변천 92
- 대남 전략전술 93
- 조직 및 기능 94
-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대화 96
- 주요 대남제의 일지 98

VIII. 남북한 비교

- 경제지표 비교 103
- 외교활동 비교 107
- 군사력 비교 108
- 통일방안 비교 109

IX. 남북 교류협력

- 남북 왕래인원 추이 113
- 남북 교역 추이 114
- 대북지원 추이 115
- 남북 이산가족교류 추이 116

X. 부 록

- 사회주의 헌법 119
- 주요 인물 약력 146
- 북한 주요기구 등 영문 표기 184

개황

I

주요 현황 110

행정구역 112

약사 113

주요 현황

(2001년 기준)

명 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 구		22,253천명
영토	면 적	122,762km ²
	국 경	1,377.2km(중국 접경:1,360km, 러시아 접경:17.2km)
	해안선	2,495km
	지 형	東高 西低
행정구역		4직할시 9도 24시 146군
정치	정권수립	1948.9.9
	정 당	'조선노동당' 1당 지도체제
	내 각 ¹⁾	34개 부서(3위원회, 27성, 1원, 1은행, 2국)
	대의기관	최고인민회의(대의원 687명, 임기 5년)
외교	수교국 ²⁾	151개국
군사	병 력 ³⁾	117만여명(육군 100만여명, 해군 6만여명, 공군 11만여명)
경제	예산 규모 ⁴⁾	98.1억달러
	명목 GNI	157억달러
	1인당 GNI	706달러
	환 율	1\$ = 2.21원/ (무역 환율 기준)
	무 역	총액 : 22.7억달러 (수출 : 6.5억달러 / 수입 : 16.2억달러)
	무역액 명목GNI	14.4%
	외 채 ⁵⁾	124.6억달러

1), 2) 2002년 4월 기준

3), 5) 2000년 기준

4) 2002년 예산 : 100.3억달러

행정구역

행정구역도



행정구역 변천

해방 당시	2002년
도	도(직합시)
군(시)	군(시·구역·구·지구)
읍·면	리(읍·동·노동자구)
리·동	
6도 9시 89군	4직합시 9도 24시 146군

※ 남한 : 1특별시 6광역시 9도 72시 91군 69구

행정구역 현황

(2001년 기준)

구 분	시·군·구역·구·지구					리·동·노동자구			도 인민위 소재지
	시	군	구역	구	지구	리	동	노동자구	
평양직할시		4	19			118	284	10	-
남포직할시		1	5			35	75		-
개성직할시		3				60	28		-
나선직할시						11	19	1	-
평안남도	5	15		1	1	363	117	29	평 성 시
평안북도	3	22				484	87	31	신의주시
자강도	3	15				235	65	17	강 계 시
양강도	1	11				144	25	67	해 산 시
함경남도	4	15		1	1	467	160	32	함 흥 시
함경북도	3	12	7			256	141	44	청 진 시
황해남도	1	19				418	26	10	해 주 시
황해북도	2	14				272	50	7	사리원시
강원도	2	15				392	60	7	원 산 시
계	24	146	31	2	2	3,255	1,137	255	-

약사

일시	내용
1945년 ~ 1950년	
1945. 8. 15	해방
1945. 10. 10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창립('조선노동당' 창당일로 선포)
1946. 3. 05	'토지개혁 법령' 공포
1946. 8. 10	'주요산업 국유화 법령' 공포
1946. 8. 28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 합당으로 북조선노동당 발족 (노동당 제1차 대회)
1946. 9. 1	'노동신문' 창간
1948. 2. 8	'조선인민군' 창군(1978년 이후 4.25로 변경)
1948. 9. 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김일성을 내각수상 및 국가수반으로 추대)
1949. 6. 30	남노당과의 합당으로 '조선노동당' 발족
1950. 6. 25	6·25 전쟁 발발
1951년 ~ 1960년	
1953. 7. 27	휴전협정 조인 (판문점)
1954. 4. 23	최고인민회의의 제1기 7차회의,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1954~1956년)계획 채택
1955. 5. 25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결성
1955. 12. 28	김일성, 당 선전선동원대회에서 주체용어 사용, 사상에서의 주체 천명
1956. 4. 23	노동당 제3차 대회, 인민경제발전 5개년(1956~1960)계획 발표
1956. 12. 11	노동당 중앙위, 경제 자립노선 천명
1956. 12. 28	'천리마운동' 개시
1957. 12. 5	노동당 중앙위, 정치에서의 자주노선 천명
1960. 8. 14	남북연방제 제의
1961년 ~ 1970년	
1961. 7. 6	소련과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 체결
1961. 7. 11	중국과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 체결
1961. 9. 11	노동당 제4차 대회, 인민경제 제1차 7개년(1961~1970년)계획 채택
1962. 12. 10	노동당 중앙위, '4대 군사노선' 채택

일 시	내 용
1966. 10. 5	노동당 제2차 대표자회, 외교에서의 자주노선 천명
1967. 12. 16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 '주체사상' 용어 사용
1970. 11. 2	노동당 제5차 대회, 인민경제 6개년(1971~1976년)계획 채택 - 당규약 전문에서 '주체사상' 을 지도이념으로 명시
1971년 ~ 1980년	
1972. 7. 4	남북공동성명 발표
1972. 12. 27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 '사회주의 헌법' 채택
1973. 9.	노동당 중앙위, 비공식회의에서 김정일을 후계자로 옹립 결의
1974. 3. 21	세금제도 폐지
1974. 9. 16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1975. 8. 30	비동맹회의 가입
1975. 9. 1	11년제 의무교육 실시
1977. 4. 29	'토지법' 채택
1977. 12. 15	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회의, 제2차 7개년(1978~1984년)계획 채택
1978. 4. 18	'사회주의 노동법' 채택
1979. 6. 8	유엔개발계획(UNDP) 가입
1980. 10. 10	노동당 제6차 대회, 김정일 비서 후계자 선출, 당규약 개정
1981년 ~ 1990년	
1984. 9. 8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합영법' 채택
1984. 9. 29	대남 수해구호물자 인도
1984. 11. 15	제1차 남북경제회담 개최
1985. 3. 7	'외국인소득세법' 채택
1985. 9. 20~23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상호 교환
1987. 4. 21	최고인민회의, 인민경제 제3차 7개년(1987~1993년)계획 채택
1989. 7. 1~8	제13회 세계청년학생평화축전 개최(평양)
1989. 10. 23	남북통일축구 서울대회 개최
1990. 9. 4~7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서울)
1991년 ~ 2000년	
1991. 9. 17	남북한 UN 동시가입

일 시	내 용
1991. 12. 13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서울), 남북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1992.2.19 발효)
1991. 12. 24	김정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
1991. 12. 28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지정
1992. 1. 30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협정' 체결
1992. 4. 9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 사회주의 헌법 개정 - 국방위원회 권한 강화, 국가주석 권한 약화
1992. 9. 17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분야별 부속합의서 서명
1992. 1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채택
1993. 1.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외화관리법',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채택
1993. 3. 12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1993. 4. 9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993. 10. 2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토지임대법' 채택
1993. 11. 1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세관법', '외국인투자은행법' 채택
1993. 12. 8	노동당 중앙위, 1994~1996년을 경제완충기로 설정 -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 천명
1994. 6. 13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
1994. 6. 18	남북정상회담 제의
1994. 7. 8	김일성 사망
1994. 10. 21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 체결
1995. 12. 15	북한 - KEDO간 경수로합정 체결
1997. 7. 28	KEDO 현장사무소 개설
1997. 9. 9	'주체 연호 사용 시작 (1997.7.8 제정)
1997. 10. 8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추대
1998. 9. 5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 사회주의 헌법 개정 - 주식제 폐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국가지도기관 전면 개편

일 시	내 용
2000. 2. 9	북한-러시아,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체결(평양)
2000. 6. 13~15	남북정상회담(평양), '남북공동선언' 채택(6.15)
2000. 7. 29~31	제1차 남북장관급 회담(서울)
2000. 9. 25~26	남북국방장관회담(제주도)
2000. 10. 9	조명복 차수, 김정일 총비서 특사로 미국 방문
2000. 10. 23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 방북
2000. 12. 28~30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회의 개최(평양)
2001년 ~ 현재	
2001. 4. 5	최고인민회의,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 채택
2001. 11. 12	반테러 국제협약에 서명 - '테러자금조달억제에 관한 국제협약',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등 2건
2002. 4. 29~6. 29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공연

정 치

II

체제의 성격	21
주체사상	21
새로운 정치이념	23
권력체계도	24
조선노동당	25
입법기관	30
행정기관	34
사법기관	36

체제의 성격

· 모든 국가권력이 '조선노동당'에 집중되어 있는 1당 독재체제이며, 장권기관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에 불과

· 수령의 유일적 영도에 의해 지배되는 수령 유일지배체제이며,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에도 김일성을 '영원한 수령'으로 지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사회주의 헌법』 서문)

주체사상

· 북한 정치체계의 규범적 원리이며 노동당 규약과 헌법의 기본 사상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

·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임을 표방하는 사상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 절대적 개인숭배 사상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혁명의 최고 령도자인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한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 원리』, 김정일, 1982)

형성과정

내 용	제 기	배 경
사상에서의 주체	당 선전선동원대회 (1955.12.28)	· 스탈린 사망(1953.3) · 1950년대 초부터 당내 국내파(갑산파) 숙청
경제에서의 자립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1956.12.11)	· 대외원조의 감소로 제1차 5개년 경제계획 (1957~1961) 추진 차질
정치에서의 자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1957.12. 5)	· 공산권내 개인숭배 반대운동 · 당내 연안파, 소련파 진압
국방에서의 자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1962.12.10)	· 중·소 분쟁의 심화와 미·소 공존 모색 · 쿠바 위기(1962.10)
외교에서의 자주	당 대표자회의 (1966.10. 5)	· 중·소 분쟁의 확대 · 비동맹 운동의 발전
종합체계화	제5차 당대회 (1970.11. 2)	· 김일성 1인 지배체제 확립 · 김일성 개인숭배운동 전개
김일성주의화	제6차 당대회 (1980.10.10)	· 김일성·김정일 부자 세습체제 공고화

우리식 사회주의

- 1990년을 전후하여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소련이 붕괴하자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여 북한실정에 맞게 정형화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표현

조선민족제일주의

-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사상과 조선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여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막고 체제걸속을 도모하기 위해 내세운 논리

붉은기사상

- 김정일(사회주의 사상)을 상징하는 붉은 기를 중심으로 굳게 뭉칠 것을 주장하는 체제수호의 구호

강성대국

- 1998년 김정일체제 출범에 맞춰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제시한 사상·군사·경제 강국 건설을 강조하는 통치 구호

선군정치

- 1990년대 중반 북한체제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체제안정과 강화를 목적으로 군을 사회의 전면에 내세운 통치 방식

· 북한정권의 권력의 원천으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는 전위당

“조선로동당은 우리나라에서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전체 근로대중 조직체 중에서 최고형태의 혁명조직이다”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사회주의 헌법」 11조)

당이념 및 목표의 변화

당 대회	지도이념	최종목표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 (1946.8.28~30)	(마르크스·레닌주의) ¹⁾	· 통일적 독립국가 건설
제2차 대회 (1948.3.27~30)	(마르크스·레닌주의) ¹⁾	· 통일적 독립국가 건설
제3차 대회 (1956.4.23~29)	마르크스·레닌주의	· 사회주의제도의 수립(대내) ·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전 한반도)
제4차 대회 (1961.9.11~18)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항일무장투쟁의 혁명 전통	· 사회주의제도의 강화발전(대내) ·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전 한반도)
제5차 대회 (1970.11.2~13)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	·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대내)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수행 (전 한반도)
제6차 대회 (1980.10.10~14)	김일성 주체사상	·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대내)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완수 (전 한반도)

1) 당시 당규약은 지도이념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출처 : 각 노동당대회 규약 및 회의록 참조

조직 및 기능

당대회 : 당의 최고기관

- 소집 : 5년에 1회
- 기능 : ①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 총화
② 당강령 규약의 채택 또는 수정·보완
③ 당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 결정 등
- 개최 : 총6회
(1차 : 1946.8, 2차 : 1948. 3, 3차 : 1956.4,
4차 : 1961.9, 5차 : 1970.11, 6차 : 1980.10)

당대표자회

- 소집 : 당중앙위원회가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소집
- 기능 :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결정
- 개최 : 총2회
(1차 : 1958.3, 2차 : 1966.10)

당중앙위원회

- 소집 : 전원회의를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
- 기능 : 당대회 사이의 모든 당사업을 조직·지도

정치국

- 기능 : 당 노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당 정책 결정의
최고 중추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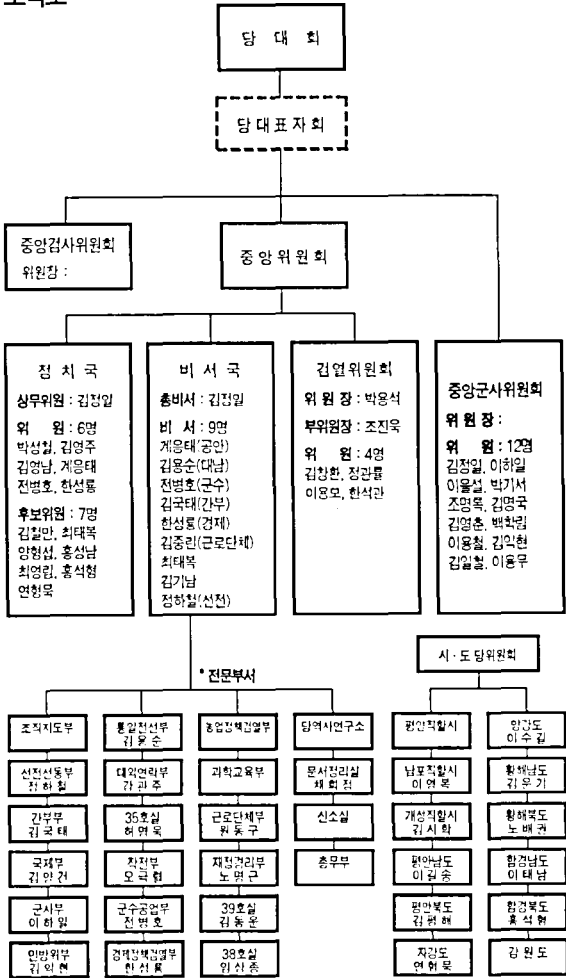
비서국

- 기능 : 간부인사와 당내문제, 기타 당면현안 등을 토의·결정, 전문부서를 일상적으로 지휘·감독하는 당의 기관
- 비서국 총비서 : 당의 최고권력자로서 국가기관에 대한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
- ※ 북한은 제6차 대회(1980. 10) 이후 당대회 혹은 당대표자회를 열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김일성 사망 이후에는 당중앙위원회 조차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

당원수

- 약 320만명(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 참가한 당대표 중 결의권 대표수와 결의권 대표의 선출 비율을 감안한 추정치)
- ※ 1961년 9월에 개최된 제4차 당대회에서 당원수 1,311,563명, 당세포수 65,000개로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당세에 관한 공식 통계 발표 전무

조직도



조선노동당 외곽단체

정당·대남 기구

조선현도교청우당 위원장 유이영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김경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전선) 의장 박성철 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부위원장 김용순 등	한국민족민주전선 (한민전) 부위원장 고대철 등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 안경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 연합북측본부 의장 김민호	민족화해협의회 회장 김경대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 위원회 위원장 문재철	자북평화통일속진 협의회 서기국장 강대우
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장 유이영	남조선의 비전향장기 수구원대책조선위원회 위원장 문재철	남조선의국가보안법불 폐를위한대책위원회 위원장 문재철		

대외 기구

조선아시아·태평양평 화위원회 위원장 김용순	조선대외문화연락 위원회 위원장대의 문재철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조선위원회 위원장 문재철	조선외교협회 부회장 김영진	조선아시아·이프리카 단결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일제의 조선강점 학예조사위원회 위원장 이응호	총근위선부 및 태평양연 평국제자보상 대책위원회 위원장 홍신옥	조선반핵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용순	반핵평화를위한조선피 폭자협회 회장 주성운	아시아여성들과연대하 는조선여성협회 회장 이청희
조선유네스코민족위 협회 위원장 최수현	조선유엔시령및농업기 구민족위원회 위원장 최수현	조선유엔개발계획민족 조정위원회 서기장 이태근	유엔기금조선조정위 협회 위원장 최수현	인종격리제도반대조선 위원회 위원장

사회 단체

감일성사학주의 청년동맹(청년동맹) 1비서 김경호	조선직업총동맹 (직총) 위원장 염순길	조선농업근로자동맹 (농근맹) 위원장 송상삼	조선민주여성동맹 (여맹) 위원장 박순희	조선직업자회 위원장 장재건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성국	조선과학보육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장영선	조선민주법률기협회 위원장 함학선	조선중앙변호사협회 위원장 이동식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최국권

경제 단체

대외경제협력추진
위원회
위원장 김응술

민족경제협력연합회
회장 장은업

조선아시아무역추진
위원회
위원장 이성복

조선국제합영추진
위원회
위원장

조선국제무역추진
위원회
위원장 김병기

종교 단체

조선카톨릭교회
위원장 이재연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 김영섭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박태호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 유미영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이재연

학술·체육 단체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양형식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문예총)중앙위원회
위원장 장 철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이광호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홍삼

국제문학연구소
소장 김경우

조선역사학회
회장 전영률

조선인문과학총연맹
위원장 장 철

조선물림작위원회
위원장 박영철

조선대권도위원회
위원장 황봉경

동아시아경기대회
협의회
회장 박영철

-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의 최고 주권기관이나 중앙정책과 관련된 입법과 집행에 대한 통제권은 노동당이 가지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는 이를 단지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만 수행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사회주의 헌법」, 제8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사회주의 헌법」, 제111조)

조직 및 기능

최고인민회의

- 헌법의 수정 및 보완,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가예산의 심의와 결산 승인 등을 수행

※ 1948년 9월 첫 회의를 가진 이래 2002년 3월 27일 제10기 5차 회의까지 총 71차례의 정기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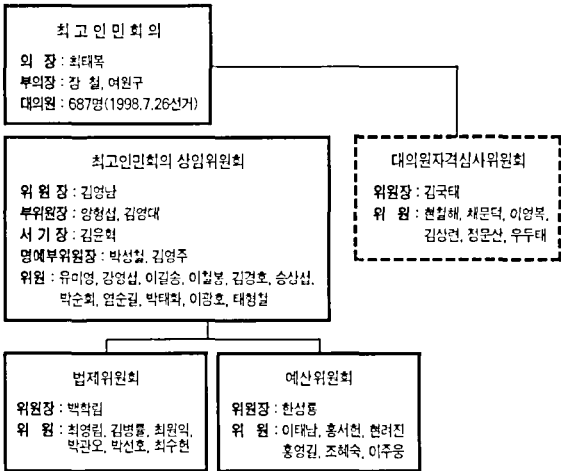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
- 상임위원장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

시·도 인민회의

- 도(직할시), 시(구역), 군 단위에 구성되는 지방주권기관으로 우리의 지방의회에 해당

조직도



헌법개정

연 도	제정·수정	비 고
1948. 9. 8	헌법 제정 (10장 104조)	· 1948.8.25 총선거(572명 대의원 선출) · 1948.9.2 최고인민회의의 제1기 1차회의 개최
1954. 4. 29	수정	· 지방행정구역 중 연 폐지, 읍·노동지구 신설
1954. 10. 31	수정	·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임기 3년 → 5년 연장 · 인민위원회를 인민회의·인민위원회로 분리
1955. 3. 11	수정	·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 권한 일부 수정 등
1956. 11. 7	수정	· 선거권·피선거권 20세 → 18세로 하향
1962. 10. 18	수정	·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출 기준 30명당 1인으로 조정
1972. 12. 27	「사회주의 헌법」 제정(11장 149조)	· 최고인민회의의 제5기 1차회의에서 채택 · 주체사상을 헌법에 명시 · 주석제 도입 및 권한 강화

연 도	제정·수정	비 고
1992. 4. 9	수정(7장 171조)	·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수정 · 국방관련 조항 보강 및 법적통제 강화
1998. 9. 5	수정(7장 166조)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수정 · 주석·중앙인민위원회·정무원 폐지, 내각 부활 · 국방위원회 위원장 권한 강화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로 개칭

북한법의 특성

- 북한의 법체계는 '조선노동당 규약' 이 헌법에 우선하는 독특한 체계로 각종 성문법보다도 최고위층 교시와 지시, 노동당의 지침·강령, 내각의 정령 또는 결정이 최고의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
- 최고위층 교시 → 노동당 규약 → 노동당 강령·지침 → 사회주의 헌법 → 내각의 정령·지침 → 성문법률의 순으로 실효성을 지님.

조직 및 기능

국방위원회

- 국방위원회가 '전반적 무력과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는 것은 국방과 관련된 국가사업 전체를 지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국방위원장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역량의 총체를 지휘·통솔하는 국가 최고직책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자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사회주의 헌법」 제100조)

내각

- 내각 총리는 정부를 대표하며, 총34개 부서(3위원회, 27성, 1원, 1은행, 2국)로 구성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사회주의 헌법」 제117조)

시·도 인민위원회

- 해당 지방인민회의의 휴회 중 해당 지방 주권기관이며, 행정적 집행기관

조직도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제1부위원장: 조명록
 부위원장: 김일철, 이용무
 위원: 김영춘, 연성국, 이을설, 백학립, 전병호, 김철만

내 각
 총 리: 홍상남
 부총리: 조창덕, 광범기, 신일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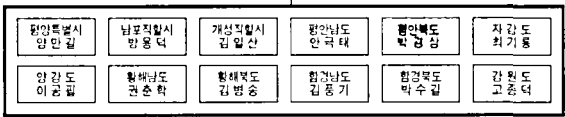
* 34개부서
 (3위원회, 27성, 1원, 1은행, 2국)

인민무력부
 김일철

국가안전보위부



시 · 도 인민위원회



사법기관

- 북한에서 사법이란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권력작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 등의 지도하에 법을 해석·적용하고 집행하는 재판기관과 검찰기관 등의 권력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

조직 및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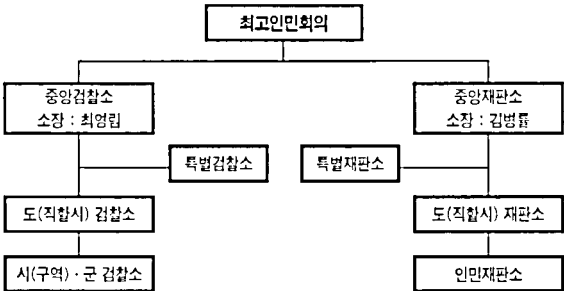
검찰소

- 우리의 검찰과 비슷한 조직으로 수사 및 공소 유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원과 같은 역할도 수행

재판소

- 우리의 법원에 해당하는 조직

조직도



외교

III

외교정책 기초	39
외교정책 변천과정	39
조직 및 기능	40
수교국 현황	40
공관 현황	42
북미관계 일지	44
북일관계 일지	45

외교정책 기초

· 대외정책 기본이념 : '자주 · 친선 · 평화'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1980.10)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사회주의 헌법」 제17조)

외교정책 변천과정

구 분	내 용
1950년대 (중·소 의존기)	소련을 추종하면서 중·소로부터 군사적·경제적 지원 획득에 주력
1960년대 (중립국외교 강화기)	소련의 후루시초프 등장 이후 아시아·아프리카의 신생 독립 국가와 외교활동 강화, 중·소는 등거리 외교 전개
1970년대 (서방외교 모색기)	중국의 UN가입(1971.9), 닉슨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조성된 국제적 화해분위기 속에서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남북한 대결에 대비, 제3세계에 대한 외교활동 강화 및 서방국가에 대한 접근 모색
1980년대 (서방외교 추진기)	공산국가와의 단결을 강조하면서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국가와도 친선관계를 맺는다는 대서방 외교 강화 방안 제시 및 추진
1990년대 (미·일외교 강화기)	소련의 붕괴와 동구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에 따른 국제적 고립탈피와 심각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미·일을 중심으로 서방국가에 대한 접근 강화
2000년 이후 (경제실리를 위한 전방위 외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미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미국과 관계개선에 합의하고 '적대관계 종식'을 알리는 공동성명 및 미사일 재발사 유예 발표 · 부시 행정부 출범(2001.1) 이후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극렬 비난하면서도 대화의지는 지속 표출 - 대 중국, 러시아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우호관계 복원 및 강화 - 대 유럽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이후 8개 EU 국가와 새로이 수교함으로써 총 15개국 중 13개국과 수교(프랑스·아일랜드만 미수교) - 대 아세안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과 관계 강화 추진

당대회, 당중앙위원회(정치국·비서국)

- 외교정책 방향 결정

※ 실질적인 외교사령탑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형식상의 '국가대표직'을 수행

당 국제부, 외무성(내각)

- 외교정책 집행
- 당 국제부 : 사회주의 국가간의 정당차원 외교활동을 담당
- 외무성 : 국가간의 정상적인 외교활동을 수행

야태평화위원회, 대외문화연락위원회

- 민간외교 차원에서 각국의 문화 및 사회단체와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기구

수교국 현황

지 역	아 주	미 주	구 주	중 동	아프리카	계
수교국가수	23	22	45	11	50	151

1991년 바하마(5.16), 벨리즈(6.20), 리투아니아(9.26), 그레나다(9.20 복교), 라트비아(9.25), ST 키츠네비스(12.13), 키프로스(12.23)

1992년 우크라이나(1.9), 투르크메니스탄(12.13), 키르기스탄(1.21), 카자흐스탄(1.28), 몰도바(1.30), 아제르바이잔(1.30), 벨로루시(2.3), 타지키스탄(2.5), 우즈베키스탄(2.7), 아르메니아(2.13), 오만(5.25), 슬로베니아(9.8), 칠레(9.25 복교), 크로아티아(11.30)

1993년 체코(1.1), 슬로바키아(1.1), 카타르(1.11), 에리트리아(5.25), 지부티(6.14), 마케도니아(11.2)

1994년 그루지아(11.3)

1996년 보스니아(1.19)

1998년 남아공(8.10)

1999년 브루나이(1.7)

2000년 이탈리아(1.4), 호주(5.8 복교), 필리핀(7.12), 영국(12.12)

2001년 네덜란드(1.15), 터키(1.15), 벨기에(1.23), 캐나다(2.6), 스페인(2.7), 독일(3.1), 룩셈부르크(3.5), 그리스(3.8), 브라질(3.9), 뉴질랜드(3.26), 쿠웨이트(4.4), 리히텐슈타인(5.2), 바레인(5.23)

※ 북한은 최근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화차관을 얻고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모색하고 있으며, 2000년 7월에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가입

공관 현황

재외 상주공관 현황

(2002년 4월 기준)

지 역	구 분	국 가
아시아	대사관 (12)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총영사관 (2)	심양, 홍콩
미 주	대사관 (3)	쿠바, 페루, 멕시코
	대표부 (1)	유엔
구 주	대사관 (11)	스웨덴,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 스위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이태리, 독일
	총영사관 (1)	나호트카(러시아)
	대표부 (6)	제네바, 유엔, 프랑스, 국제해사기구(IMO), 유네스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중 동	대사관 (3)	이집트, 시리아, 이란
	대표부 (2)	쿠웨이트(무역), 예멘(경제참사부)
아프리카	대사관 (9)	리비아, 기네, 나이지리아, 적도기네,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구 자이르), 마다가스카르
계	대사관 : 38	총영사관 : 3 대표부 : 9

북한주재 외국공관 현황

(2002년 4월 기준)

지 역	구 분	국 가 (설치시기)
대사관	아시아 (8)	몽골(1950.8), 중국(1950.10.25), 베트남(1950.10.25), 인도네시아(1964.4.18), 캄보디아(1964.12.20), 인도(1973.12.10), 파키스탄(1974.5.7), 라오스(1998.3.25)
	미주 (1)	쿠바(1961.10)
	구주 (8)	러시아(1948.10.13), 폴란드(1948.10.13), 루마니아(1952.4.18), 불가리아(1950년대 초), 유고(1973.8.26), 스웨덴(1975.3), 독일(2002.1), 영국(2002.7.30),
	중동 (3)	이집트(1963), 시리아, 이란
	아프리카 (3)	이디오피아(1985.6.14), 나이지리아(1988.4.7), 리비아(1981.10)
총영사관	(2)	러시아(청진), 중국(청진)
국제기구	(4)	UNDP(1980.12), UNICEF(1993.5), WFP(1995.10), WHO(2001.11)
기 타	(1)	PLO 사무소

* 북한주재 서유럽 상주대사관 설치국 : 스웨덴, 영국, 독일

북미관계 일지

일 자	내 용
1992. 1. 22	켄터 미 국무차관-김용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 회담(뉴욕)
1993. 6~1994.10	북·미 핵협상
1994. 6.15~18	카터 전 미 대통령, 북한 방문
1994. 10. 21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 체결(제네바)
1995. 12. 15	KEDO·북한,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1996. 4.20~21	제1차 북·미 미사일회담(베를린)
1997. 6.11~13	제2차 북·미 미사일회담(베를린)
1998.10.1~2	제3차 북·미 미사일회담(뉴욕)
1999. 3.29~30	제4차 북·미 미사일 회담(평양)
1999. 5.25~28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 북한 방문
1999. 9. 7~12	북·미 고위급 회담(베를린)
1999. 9. 17	클린턴 미 대통령, 대북경제제재 부분 해제 발표
1999.11.15~19	북·미 고위급 회담(베를린)
1999. 5.20~24	미국, 금창리 핵의혹 시설 방문
2000. 1.22~28	북·미 고위급 회담(베를린)
2000. 3. 8~15	북·미 고위급 회담 준비회담, 북·미 테러회담(뉴욕)
2000. 5.24~30	북·미 핵 회담(로마)
2000. 6. 19	미국, 대북경제제재 완화 조치 발표
2000. 7.10~12	제5차 북·미 미사일 회담(퀵라룸푸르)
2000. 7. 28	북·미 제1차 외무장관회담(방콕)
2000. 8. 9~10	북·미 테러회담(평양)
2000. 10. 10	북한 조명록 특사, 워싱턴 방문
2000. 10. 23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평양 방문
2000.11. 1~3	제6차 북·미 미사일회담(퀵라룸푸르)
2001. 1. 18	북·미 비공식 실무회담(뉴욕)
2001. 2.27~3. 3	북한 경제시찰단, 사상 첫 미국 방문
2001. 4. 30	미국,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발표
2001. 5. 3	북한, 미사일 2003년까지 발사유예 발표
2001. 5. 12	미국, 북한에 식량 10만톤 지원 발표
2001. 6. 6	부시 미 대통령, 대북대화 재개 발표
2001. 6. 13	북·미 대화재개를 위한 실무접촉(뉴욕)
2002. 1. 29	부시 미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규정
2002. 4. 30	미국, 북·미 대화재개 성명 발표 - 북한, 미국의 대북교섭담당 프리차드 대사의 방북 수용

북일관계 일지

일 자	내 용
1990. 9. 28	일본 자민-사회당 합동대표단(가네마루 신 등), 북한 방문 - 수교회담, 과거 보상관련 공동선언 발표
1991. 1. 31 ~1992.11.5	수교회담 본회담 1차 : 평양(1991. 1. 31) 2차 : 도쿄(1991. 3. 11) 3차 : 북경(1991. 5. 20) 4차 : 북경(1991. 8. 31) 5차 : 북경(1991.11. 18) 6차 : 북경(1991.11.30) 7차 : 북경(1992. 5. 13) 8차 : 북경(1992.11. 5)
1995. 6. 30	일본 북한에 쌀 30만톤 지원 발표
1995. 9. 30	일본 북한에 쌀 20만톤 추가지원 발표
1997. 8.21~22	수교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회담(북경)
1997. 11. 8	북송 일본인 처 고향방문단 1진 15명 일본 방문
1998. 1. 27	북송 일본인 처 고향방문단 2진 12명 일본 방문
1998. 3. 28	일본 자민당대표단 북한 방문
1998. 8. 31	북한, 일본 상공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1998. 9. 1	일본,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4개항 제재조치 발표
1998. 9. 15	북한, 일본이 적대행위를 하는 한 국교정상화 불가 선언
1998. 10. 16	일본, 경수로 건설비 분담 서명 결정
1999. 8. 10	북한, 일본에 대한 3원칙 천명 - ①대북 압살정책 포기, ②과거 죄행에 대한 사죄 및 보상, ③대결정책에 상응하는 대응책 강구
1999. 12. 1	일본 초당파의원 대표단, 북한 노동당 초청으로 북한 방문 - 수교회담 조기재개 합의
1999. 12. 14	일본, 대북 경제제재 전면 해제
1999. 12. 19	적십자회담 및 수교회담을 위한 제1차 예비회담(북경)
2000. 3. 13	적십자회담 및 수교회담을 위한 제2차 예비회담(북경)
2000. 4. 4	제9차 수교회담 본회담(평양)
2000. 8. 22	제10차 수교회담 본회담(도쿄)
2000. 9. 12	북송 일본인 처 고향방문단 3진 16명 일본 방문
2000. 10. 6	일본, 대북 쌀 50만톤 지원 발표
2000. 10. 30	제11차 수교회담 본회담(북경)
2001. 11. 29	일본, 조총련계 신용조합 금융사건과 관련하여 조총련중앙 본부 압수수색
2001. 12. 22	괴선박 동중국해에서 일본에 의해 격침
2002. 3. 22	조선적십자회, 행불자 조사 재개 및 적십자 회담 제의
2002. 4. 29	북·일 적십자회담 개최(북경) - 일본인처 고향방문(4차) 및 행불자 조사 합의

군사

IV

군사정책 기초	49
조직 및 기능	50
군사력 현황	52
군사비 추이	53
미사일 개발 및 제원	54
핵문제 관련 주요동향 일지	55

군사정책 기초

-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표방하면서 결정적 시기 도래시 전후방 동시공격, 고속 기동진, 단기 속진속결 전략 견지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사회주의 헌법」 제60조)

군사정책 변천과정

구 분	내 용	비 고
1960년대	(4대 군사노선의 추진) · 경제건설과 군사건설의 병진 · 전당· 전인민의 전쟁동원태세 확립	· 중· 소 의존정책에서 탈피 · 1969년 특수8군단 창설
1970년대	(4대 군사노선의 관철) · 자립적 군사공업기지를 완성하여 획기적인 지위력의 육성 · 정규· 비정규, 소부대· 대부대 배합전술 위주 교리개발	· 독자적 전쟁수행능력 향상 · 휴전선에 남침용 땅굴 굴설
1980년대	(4대 군사노선의 강화) · 전투동원태세 완비 · 예비전력의 정규군 수준화 · 현대전 능력 보강	· 기계화군단, 지구사령부, 민방위부 설치 · SCUD미사일 개발 및 배치
1990년대	(4대 군사노선의 발전) · 군민일치 강화 · 전국가적· 전인민적 방위체계 강화 · 독자적 전략무기체계 구축	· 군사중시, 군대원호 기풍 진작 · 노동미사일 개발· 배치· 수출 및 대포동미사일 시험발사, 방사포 등 장사정포 전방배치

※ 4대 군사노선 :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조직 및 기능

인민무력부

- 국방위원회 산하의 군사 집행기구로서 정규군의 군무를 총괄·집행하며 총참모부가 실질적으로 군사작전을 지휘·관장

총참모부

- 우리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기구로 육해공군을 지휘하는 사령부 역할 수행

총정치국

- 북한군은 군대 안의 당 정치조직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치사업을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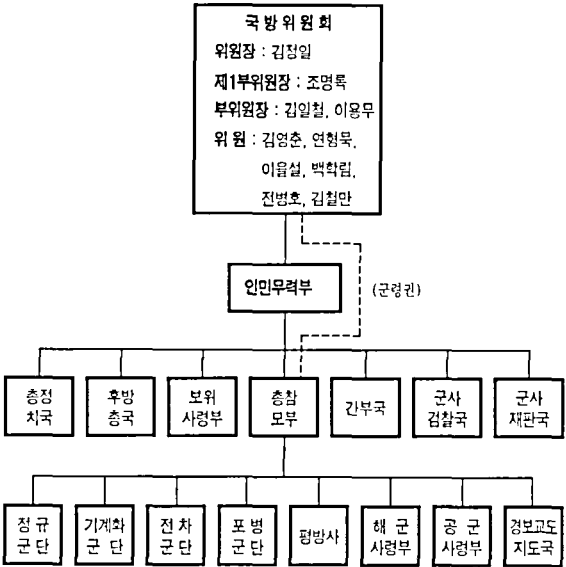
보위사령부

- 군대 안의 반당, 반혁명, 반체제, 반국가 분자들을 색출하고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시 경호 등의 업무를 담당

※ 국방위원회 : 34쪽 참조

※ 당 중앙위 군사위원회 : '당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 ('노동당 규약' 제27조)

조직도



군사력 현황

(2000년 기준)

구		분		현		황		
병	력	지 상 군		100만여명	117만여명			
		해 군 ¹⁾		6만여명				
		공 군		11만여명				
주	요	부	군 단	19개				
			사 단	67여개 ²⁾				
			여 단 ³⁾	76여개(포병 30여개 여단 제외)				
		장	전 차	3,700여대				
			장갑차	2,200여대				
			야 포	12,700여문				
	전	력	해 군	수상전투기	430여척			
				지 원 함	470여척 ⁴⁾			
				잠수함(정)	90여척 ⁵⁾			
			공 군	항공기	-			
				전 투 기	870여대			
				특 수 기				
지 원 기	850여대 ⁶⁾							
예비전력(병력)				748만여명 ⁷⁾				

예비병력 현황

구	분	교도대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인민경비대
병	력 수	173만명	414만명	118만명	11만명
연	령	17~45세 여자 17~30세	40~60세 남자(위주 편성)	14~16세 고등학교과~6학년	인민보안성/인민무력부
소	화 기	100%	100%	100%	100%
공	용 화 기	70~80%	일부	일부	100%
훈	련 시 간	연 500시간	연 160시간	연 450시간	정규군과 동일

1) 해병대 포함 2) 미사일 사단 미포함 3) 보병, 기보, 전차, 특수전, 경비, 해병, 감승 등 기동/전투여단 포함 4) 해상경비정대 소속 해상경비정 170여척 포함 5) 잠수정 40여척 포함 6) 공군에서 통합 운용 7) 교도대,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인민보안성 요원 포함

* 자료출처 : 2001년도 국방주요자료집(국방부)

군사비 추이

(억달러)

연 도	총예산	군 사 비	총예산 대 군사비 비율(%)
1991	171.7	51.3(20.8)	29.9(12.1)
1992	184.5	55.4(21.0)	30.0(11.4)
1993	187.2	56.2(21.5)	30((11.4)
1994	191.9	57.6(21.9)	30(11.5)
1995	208.2	63.0	30
1996	?	57.8	?
1997	91.0	47.8	52
1998	91.0	47.8(13.3)	52(14.6)
1999	92.3	47.8(13.5)	51(14.6)
2000	95.7	45~50(13.6)	47~52(14)

* 1995년~1997년 군사비는 GNI 27% 적용수치, ()내는 북한 공식발표 군사비

* 자료출처 : 2001년도 국방주요자료집(국방부)

미사일 개발 및 제원

미사일 개발경과

연 도	개 발 / 생 산 활 동
1970년대 초	중국의 미사일 개발계획 참여 미사일 기술획득(추정)
1976~1981	소련제 SCUD-B 미사일 및 발사대를 이집트로부터 도입 역설계/개발
1984	SCUD-B 미사일 최초 시험 발사
1986	SCUD-C 미사일 시험 발사
1988	SCUD-B/C 작전 배치
1989	노동 미사일 최초 식별, 개발 시작 추정
1993	노동 1호 미사일 시험 발사
1994	대포동 1호 미사일 최초 식별
1998	노동 미사일 작전 배치, 대포동 1호 시험발사

미사일 제원

구 분	SCUD-B	SCUD-C	노동 1호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
사거리(km)	300	500	1,300	2,500	개발 추정
탄두중량(kg)	1,000	770	1,000	1,000(추정)	
비 고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시험발사	

* 자료출처 : 2001년도 국방주요자료집(국방부)

핵문제 관련 주요동향 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1956. 3	소련과 '원자력 협정' 체결
1962.	영변원자력연구단지 설치
1965. 5~6	소련으로부터 제공받은 2 MW IRT 연구용 원자로 건설(영변)
1967.	2 MW IRT 원자로 가동 - 산업, 의료 및 연구용 동위원소 생산
1974. 9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1977. 9	IAEA와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안전조치협정' 체결
1985.12.12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1986.12	정무원 산하 원자력 공업부 신설
1987.	영변 5 MW GMR 가동
1990. 3. 6	IAEA 이사회, 북한의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 권고
1991.11. 8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발표 -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화학·생물무기 제거 및 북한의 핵사찰 수용 촉구
1991.12.31	남북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1992.2.19 발효) - 핵무기 제조·접수·사용 금지, 핵에너지 평화목적 이용, 쌍방 합의하는 대상에 사찰실시 등
1992. 1.30	IAEA와 핵안전조치협정 서명
1992. 5. 4	북한, IAEA에 최초보고서인 핵사찰대상 목록(핵물질 초기 재고량 보고서와 핵설비 명세) 제출
1992. 5.25 ~ 6.5	IAEA, 북한이 제출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완벽성을 검증하기 위한 임시(비정기) 사찰 실시(~1993.2월까지 6차례 임시사찰 실시)
1993. 2. 9	IAEA, 북한에 특별사찰 수용 촉구
1993. 2.15	북한, IAEA의 특별사찰 수락불가 답신
1993. 3.12	NPT탈퇴 성명 발표
1993. 5. 11	UN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의 IAEA 사찰 수용 및 NPT 탈퇴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일 자	주 요 내 용
1993. 6. 2 ~ 6.11	제1차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뉴욕) - 미북간 대화 지속 및 NPT 탈퇴 효력을 임시 정지
1993. 7.14 ~ 7.19	제2차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 (제네바) - 북한의 핵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논의
1993.11.11	북한, 미국에 핵문제 일괄타결방안 제의
1994. 5	북한, 안전조치협정을 위반하고 5MW 핵연감속로에서 핵연료 인출 감행
1994. 6.10	IAEA,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을 유보하는 결의안 채택
1994. 6. 1	북한, IAEA 탈퇴 선언
1994. 6.15. ~ 6.18	카터 전 미 대통령, 북한 방문 - 북한은 핵프로그램 동결 대신 북·미간의 고위급 회담 재개 제의
1994. 7. 8. ~ 7.10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개최(제네바) - 북한 핵동결에 대해 논의
1994.10.21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 체결 - 북한의 핵시설 동결 및 궁극적 해체 - 2003년을 목표로 1,000MW급 경수로 2기 제공 - 대체 에너지(중유)를 연간 50만톤 제공 - 북·미 관계 개선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및 남북대화 재개 등
1994.11. 1	북한, 핵활동 동결 선언
1995.12.15	KEDO·북한,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1998. 6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실험·수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
1998. 8.10	Time(8.17)지,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핵의혹 제기
1998. 8.31	북한, 미사일(대포동 1호) 시험 발사
1999. 3.16	북·미,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 합의 - 사찰일정: 1차 1999년 5월 중순, 2차 2000년 5월, 3차 미국 요청시 - 기타 : 식량 60만톤 지원, 감자재배 시범사업 지원
1999. 5. 3	일본, KEDO·일본간 차관공여 협정 서명
1999.5.18~5.24	미국 사찰팀,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
1999.5.25~5.28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 북한 방문

일 자	주 요 내 용
1999. 6.25	미국, 금창리가 건설 단계이어서 아무런 시설이 없다고 발표
1999. 9.15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 대북정책권고안 미의회 보고 - 대북정책 추진 3단계 :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자제유도와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 일부 완화(단기),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중단 보장(중기), 한반도 냉전 종식(장기)
1999. 9.17	클린턴 미 대통령, 대북제재 부분 해제 발표
1999.10. 1	IAEA, 대북 핵안전협정 이행촉구 결의안 채택
1999.11.16	1999년분 중유 50만톤 북한에 제공 완료
1999.12.15	KEDO·한전간 주계약 공식 서명
2000. 2. 3	대북지원 경수로 본공사 시작
2000. 5.25 ~ 5.27	미국, 북한 금창리지역 2차 사찰 실시 - 1차 방문 때와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함.
2000.10.20	KEDO·북한, 훈련의정서 발효
2000.12. 3	KEDO·북한, 품질보장의정서 발효

경제

V

경제체제 및 정책	61
경제관리방법 및 경제구호	61
경제계획의 목표	62
최근 경제시책 방향	63
주요 경제지표 변화추이	64
재정의 특징과 규모	65
사회간접자본 실태	66
식량·비료 수급 실태	67
농민시장	69
대외무역 동향	70

경제체제 및 정책

-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으로 소유' 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 경제정책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중공업 우선정책, 군사·경제의 병진 등을 기본적인 노선으로 견지

경제관리방법 및 경제구호

청산리 정신(방법)

- 1960년 2월 청산리협동농장 현지도시 김일성이 "농업부문의 모든 사업은 정치사업을 통해 대중적인 열성을 고취시킴으로써 당 정책을 관철시키라"고 제기한 대중지도 사상(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 1961년 12월 대안전기공장 현지도시 김일성이 지시한 공업부문 관리방법으로 공장·기업소에서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독립채산제 실시 등을 통해 물질적 자극보다 정치도덕적 자극을 강조

독립채산제

- 공장·기업소의 독자성을 일부 허용하여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제기되는 생산력 저하문제를 해소하려는 경영관리 방법(1962년 중앙의 국영기업소 → 1980년 부터 지방산업공장으로 확대)

라남의 봉화

- 김정일이 2001년 8월 현지도한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함북 청진) 노동자들의 투쟁 기풍을 전사회에 일반화하자는 캠페인으로 기술혁신과 업종 전문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진의 경제 슬로건과는 차별

경제계획의 목표

구 분	기본과업	주요목표	비 고
제1차 7개년 계획 ¹⁾ (1961~70)	· 중공업 발전 · 경공업 · 농업의 동시 적 발전 · 전국적 기술혁신 · 문화혁명과 국민생활 의 향상 · 국방 · 경제 병진	· 국민소득 : 2.7배 · 공업총생산 : 3.2배 · 곡물수확고 : 600~ 700만톤	· 1968 ~ 70 : 계획기간 3년 연장
6개년 계획 ²⁾ (1971~76)	· 사회주의 물질 · 기술 적 토대 견고화 · 산업설비 근대화 · 기술혁명 촉진 · 노동자를 힘든 노동에 서 해방	· 국민소득 : 1.8배 · 공업총생산 : 2.2배 · 곡물수확고 : 700~ 750만톤	· 1976 ~ 77 : 완충기 설정
제2차 7개년 계획 ³⁾ (1978~84)	· 인민경제의 주체화 · 현대화 · 과학화 · 생산원가 인하 · 절약운동 강화 · 수송의 근대화 · 주민생활 향상 · 독립채산제 강화 · 대외무역 증대	· 국민소득 : 1.9배 · 공업총생산 : 2.2배 · 곡물수확고 : 1,000 만톤 · 1980년대 10대 전 망목표와 4대 자연 개조사업 추진	· 1985 ~ 86 : 완충기 설정
제3차 7개년 계획 ⁴⁾ (1987~93)	· 인민경제 주체화 · 현대화 · 과학화 · 기술혁신 ·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 증대	· 국민소득 : 1.7배 · 공업총생산 : 1.9배 · 농업총생산 : 1.4배	· 1994 ~ 96 : 완충기 설정 · 농업 · 경공업 · 무역 제일주의

1) 제4차 당대회 보고(1961.9.11)

2) 제5차 당대회 결정서(1970.11.2)

3)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1977.12.15)

4) 최고인민회의 제8기 2차 회의(1987.4.21) 및 제6기 21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1993.12.8)

최근 경제시책 방향

과학기술 육성

- 최근들어 북한은 "21세기=정보산업시대", "첨단과학기술=컴퓨터 산업"으로 등식화하면서 IT산업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을 부각

경제 전반의 생산 정상화

- 산업설비의 보수·정비를 통해 공장·기업소가동률 제고에 주력

대외 경제협력 강화

- 경제관료들의 해외연수 파견, 국제경제기구 가입 모색, 외국과의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등을 통해 '우리식 사회주의'를 견지하면서 대외 경제협력 강화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

- 토지정리, 분조관리제 개선, 이모작 등 '농업혁명'과 인민 소비품(생필품) 증산에 총력 경주

실리 추구 강조

-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난·에너지난·외화난 등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경제운영에 있어 효율성·수익성 등 실리 강조

'모든 부문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
(2000년 신년공동사설)

1998년 헌법 개정시 독립채산제 및 원가, 가격, 수익성 등 생산조직의 채산성 관련규정 명문화(「사회주의헌법」 제33조)

주요 경제지표 변화추이

구 분	단 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GNI	억달러	223	214	177	126	158	168	157	
1인당 GNI	달러	1,034	989	811	573	714	757	706	
경제성장률 (GDP 기준)	%	-4.1	-3.6	-6.3	-1.1	6.2	1.3	3.7	
무역총액	억달러	20.5	19.8	21.8	14.4	14.8	19.7	22.7	
외채	억달러	118	120	119	121	123	125	N.A.	
에너지 산업	석탄생산량	만톤	2,370	2,100	2,060	1,860	2,120	2,250	2,310
	발전량	억kwh	230	213	193	170	186	194	201.5
	원유도입량	만톤	110	94	51	50	32	39	57.9
농수 산물 생산량	곡물	만톤	345	369	349	389	422	359	396
	쌀	만톤	121	134	150	146	163	142	168
	수산물	만톤	105	88	65	63	66	70	75
광공업 생산량	철광석	만톤	422	344	291	289	379	379	421
	강철	만톤	153	121	102	95	124	109	106
	자동차	만대	0.87	0.85	0.64	0.64	0.73	0.66	0.57
	시멘트	만톤	422	379	334	315	410	460	516
경공업 생산량	직물	억m ³	1.8	1.5	1.2	1.1	1.0	1.1	1.0
	화학섬유	만톤	5.6	5.6	3.7	3.5	2.7	2.9	2.7

재정의 특징과 규모

- 집단적(사회주의적) 소유를 기초로 운영되는 북한경제는 모든 경제활동이 재정에 반영
- 재정의 기능은 분배적 기능과 통제적 기능으로 구분되며, 특히 중앙당국의 지도하에 모든 경제단위들이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두 기능의 구분이 뚜렷
 - 재정계획은 크게 기본재정계획(국가예산)과 인민경제부문 및 기관·기업소의 재정계획으로 구분
- ∴ 재정의 통제·감독권한은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 및 내각에 부여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탈법적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은행기관과 검열·통제기관의 검열활동을 강화

2002년 예산내역

- 2002년 예산편성은 경제건설 수요확대 및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지난해의 재정 운용방식을 견지
-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과학·보건·교육 등에 쓰여지는 '인민적 시책비'를 전년대비 5~6% 상향 책정

(북한 발표 자료)

구분	인민경제비	인민적시책비	군사비	관리비	합계
예산	92억 3,068만 4천원 (41.8억 달러)	85억 9,704만 3천원 (38.9억 달러)	31억 9,302만 6천원 (14.4억 달러)	11억 5,303만 7천원 (5.2억 달러)	221억 7,379만원 (100.3억 달러)
비중	41.6%	38.8%	14.4%	5.2%	100.0

* 대미환율 : 2.21원

* 2002년 우리 예산 : 803.2억 달러(북한의 8배)

사회간접자본 실태

전력(2001년)

- 총발전설비 용량 : 775만kwh(남한 5,086만kwh의 15.2%수준)
 - ※ 전체 발전설비의 70% 정도가 폐기 또는 보수를 필요로 하는 설비
- 전력 생산(발전)량 : 202억kwh(남한 2,852억kwh의 7% 수준)
 - ※ 수력 대 화력의 비중은 6:4로 수력의존적 구조이며 최근 들어서도 전력난은 심각한 실정

수송(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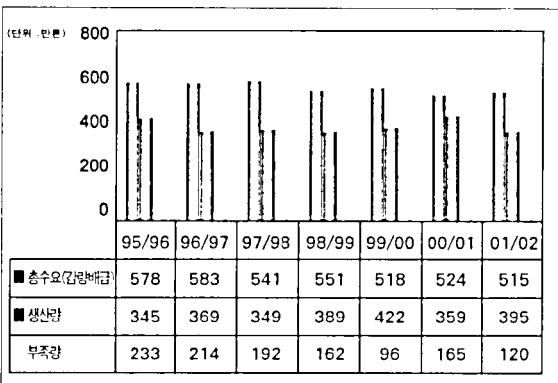
- 철도 총연장 : 5,224km(남한 3,125km의 1.7배)
 - ※ 전력 부족으로 잦은 운행 중단(전철화율 : 80%)
- 도로 총연장 : 23,963km(남한 91,396km의 26% 수준)
 - ※ 도로 포장율이 10% 정도에 불과하고 2차선 이하가 대부분
- 항만 하역능력 : 3,550만톤(남한 46,960만톤의 8% 수준)

식량·비료 수급 실태

식량수급 실태 및 전망

- 북한의 식량사정은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 및 자체 증산으로 인해 1997년을 고비로 다소 호전
 - 연간 수요량 600여만톤, 자체 생산량 400만톤 내외로 여전히 연간 200여만톤의 식량이 부족
 - 북한은 1인당 1일 식량배급량을 22% 감량 조치(정상 : 700g → 감량 : 546g)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세계식량기구'가 정한 최저 소비량인 400g에도 미달하는 실정
- 2002년도에는 수요량 626만톤, 생산량 395만톤으로 총 231만톤이 부족
 - 22% 감량배급시 수요량은 515만톤으로 120만톤 부족
 - 따라서 감량배급의 경우에도 국제사회로부터 최소한 100~200만톤 정도의 식량지원이 필요한 상황

연도별 식량수급 현황



비료수급 실태 및 전망

- 1990년대 들어 연간 100만톤의 비료가 구조적으로 부족
 - 연 350만톤의 화학비료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생산량은 50~80만톤에 불과
 - 단비 중심 생산체제로 복합비료 생산이 극히 저조
- 2002년에는 수요량 158.6만톤, 생산량 54.6만톤으로 약 104만톤이 부족
 - 국제사회의 지원을 포함한 외부도입량을 감안해도 부족량은 상당
- ※ 연도별 비료 도입량 :
 - 1996년 : 6.1만톤, 1997년 : 20.5만톤, 1998년 : 26.4만톤,
 - 1999년 : 30.7만톤, 2000년 : 40~45만톤, 2001년 : 40만톤

농민시장

- 해방 직후에 잔존해 있던 재래식 시장을 1958년 8월 내각결정 140호에 의거 '농민시장'으로 명명한 바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공식 배급능력의 지하로 생존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암거래 형태로 변화되면서 확대
- 물가는 다소간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안정화되고 있으며, 지역간 가격 차이도 점차 완화되는 양상

주요품목가격

(단위 : 북한 원)

분류	품목	단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곡류	쌀	kg	77	64	47	50
	강냉이알	kg	40	33	27	32
	밀가루	kg	61	45	43	42
육어류	돼지고기	kg	181	160	130	138
	계란	개	16	13	12	10
	명태	마리	32	41	35	83
채소 및 과일류	배추	포기	9	20	25	14
	미역	kg	31	31	67	70
	사과	개	23	33	23	32
조미료	소금	kg	19	15	19	14
	콩기름	kg	255	163	195	203
	고추가루	kg	274	239	274	241
간식 및 기호품	빵	개	19	15	12	17
	샘물	병	3	18	31	13
	맥주	병	78	68	53	35
기타 생필품	구두	켤레	1,489	900	1,180	700
	세수비누	개	92	66	64	83
	셔츠	벌	400	472	614	395

무역정책의 변화

사회주의권 붕괴이전

- 자체생산이 불가능한 필요상품만을 무역을 통해 해결한다는 소극적 입장

사회주의권 붕괴이후(1990년대 이후)

-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지정(1991), '무역제일주의' 제시(1994) 등 무역에 보다 적극적 자세
- 대서방 경제외교를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가입(2000.7) 및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기구 가입 추진
- 외국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시장경제 연수 실시
1999년 : 130여명(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6개국)
2000년 : 170여명(영국, 호주 등 11개국)
2001년 : 500여명(미국, 중국 등 20개국 및 국제기구)
- ※ 대외경제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 채택(2001.4)

2001년 무역동향의 특징

- 중국·일본·EU 등 주요 무역상대국들과의 수출입 증가에 힘입어 총교역규모 전년대비 15.1% 증가
- 공장개건, 현대화를 위한 기계·전기·전자제품 수입 규모 증가(전년대비 18.9% 증가)

대외무역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합 계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1991	1,010	△ 24.2	1,710	△29.8	2,720	△34.8
1992	1,020	1.0	1,640	△4.1	2,660	△2.2
1993	1,021	0.1	1,620	△1.2	2,641	△0.7
1994	839	△17.8	1,269	△21.7	2,108	△20.2
1995	736	△12.3	1,316	3.7	2,052	△2.7
1996	726	△1.3	1,250	△5.0	1,976	△3.7
1997	904	24.5	1,272	1.8	2,177	10.1
1998	559	△38.2	883	△30.6	1,442	△33.7
1999	515	△7.9	965	9.3	1,480	2.6
2000	556	8.0	1,413	46.5	1,970	33.1
2001	650	14.9	1,620	15.2	2,270	15.1

사회·문화

VI

주민 통제	75
주민의식 변화 동향	76
주민 사상교육 강화	76
주민성분 분류(3계층 51부류)	77
계층별 주택배당	78
계층별 임금수준	79
교육체계 및 교과과정	80
보건·의료정책 및 시설	82
출판·보도 현황	83
명절	85
주요 도시	86

주민 통제

주민통제기본원리

- 수령 - 당 - 대중이 통일체를 이루어야 대중인 개인이 영생을 얻을수 있다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기초하여 당을 중심으로 주민을 통제
 -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수뇌'임을 강조

당적 통제

- 노동당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서 모든 기관과 단체에는 당위원회가 조직되며, 당 하부조직인 도·시·군 당위원회, 말단의 당세포 조직 등을 통해 통제

조직생활을 통한 통제

- 모든 주민들은 당 외곽단체인 '직총', '여맹', '청년동맹' 등 각종 사회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조직생활을 해야하며,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등의 사찰기관,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 '생활총화', '인민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을 통제

경제적 통제

- 식량, 생필품 등 생존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 생활의 기본수단에 대한 '배급제'를 통해 통제

사회적 통제

- 출신성분과 계층에 따라 학교 및 직장배치, 주민이동(여행) 등을 차별화하여 통제

주민의식 변화 동향

물질주의 추구성향 확산

- 경제난이 가중되고 공급물량 부족 등으로 인한 배급체계의 부분적 마비로 식량·생필품 등의 농민시장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생계를 위한 자본주의 및 개인주의적 의식 받아들

주민들의 대남인식 변화

- 남북정상회담 이후 인도적 대북지원 지속 및 이산가족 교환방문 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 완화

주민 사상교육 강화

자본주의 병폐 선전

- 각 보도매체를 통해 자본주의 생활양식은 '인간을 돈과 향락만을 추구토록 만드는 무서운 마약', '수정주의 날라리풍' 등이라고 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 배격을 강조

주민들에게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 촉구

- 이른바 '자본주의 황색바람' 등이 침습하지 못하도록 '사상·문화의 모기장'을 튼튼히 칠 것과 부르조아 생활양식 유입차단을 위한 주민 사상교양과 투쟁을 지속적으로 강조

주민성분 분류(3계층 51부류)

계 층	부 류	대 우
핵심계층 (28%)	노동자, 고농(머슴), 빈농, 사무원, 노동당원, 혁명유가족, 애국열사유가족, 8·15이후 양성된 인테리, 6·25 피살자 가족, 전사자 가족, 후방가족, 영예군인 등 (12부류)	- 당, 정, 군 간부 동용 - 타계층과 분리 특혜조치 (진학, 승진, 배급, 거주, 진료 등에서 특혜조치)
동요계층 (45%)	중소상인, 수공업인, 소공장주, 하층 집객업자, 중산층 집객업자, 월남자 가족, 중농, 민족자본가, 중국귀환민, 일본귀환민, 8·15이전 양성된 인테리, 안일·부활·방탕한자, 접대부 및 미신송배자, 유학자 및 지방유지, 경제사범 등 (18부류)	- 각종 하급간부 및 기술자 진출 - 국소수 핵심계층으로 승격
적대계층 (27%)	8·15이후 전락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친미주의자, 반동관료배, 천도교 청우당원, 입북자, 기독교신자, 불교신자, 천주교신자, 출당자, 적기관 복무자, 체포·투옥자 가족, 간첩관계자,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처단자 가족, 흡소자, 정치범, 민주당원, 자본가, 월남자 가족 등 (21부류)	- 유해, 중노동에 종사 - 입학, 진학, 입당 봉쇄 탄압 - 제재, 감시, 포섭 대상으로 분류

계층별 주택배당

구분	주택형	가옥구조	입주대상자
특호	독립고급주택	독립식 단층 또는 2층 주택 정원, 수세식변소, 냉난방 장치	·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 · 내각 부상급 이상 · 인민군 소장급 이상
4호	신형고층아파트	방2개이상, 목욕탕, 수세식 변소, 베란다, 냉온수시설	· 중앙당 과장급 이상 · 내각 국장급 이상, 대학교수, · 인민군 대좌, 문예단체간부, · 기업소 책임자
3호	중급단독주택및 신형아파트	방2개, 부엌, 창고	· 중앙기관지도원 · 도단위부부장급, 기업소부장
2호	일반아파트	방1~2개, 마루방1, 부엌1	·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교장, · 일반노동자, 사무원
1호	집단공영주택	방1~2개, 부엌1	말단노동자 및 사무원
	농촌문화주택	단층 연립주택, 방2개, 부엌1, 창고1	협동농장원
	구옥	방2~3개의 농촌 기존 구옥	변두리 농민

계층별 임금수준

구 분	직 책	임 금
당 · 정기관	· 내각의 상	300~350원
	· 내각의 부상,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250~300원
	· 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군인민위원회 위원장	170~200원
공장/기업소	· 특급기업소, 지배인	250~300원
	· 1~2급 기업소 지배인	150~200원
노동자/사무원	· 광부, 제철, 제련공 등 중노동자	90~100원
	· 일반기계공, 운전기사 등 경노동자	75 ~ 80원
	· 일반경노동자	70 ~ 80원
	· 사무원	60 ~ 70원
교원	· 대학교원	200~250원
	· 일반교원	80원
군장교	· 장령급	250~400원
	· 영관급	120~215원
	· 위관급	84~110원
서비스종사자	· 여관, 이발소, 식당 등 편의시설 종사자	20 ~ 60원
	· 인민배우, 공훈배우 등	200~500원
	· 의사	120~250원

교육체계 및 교과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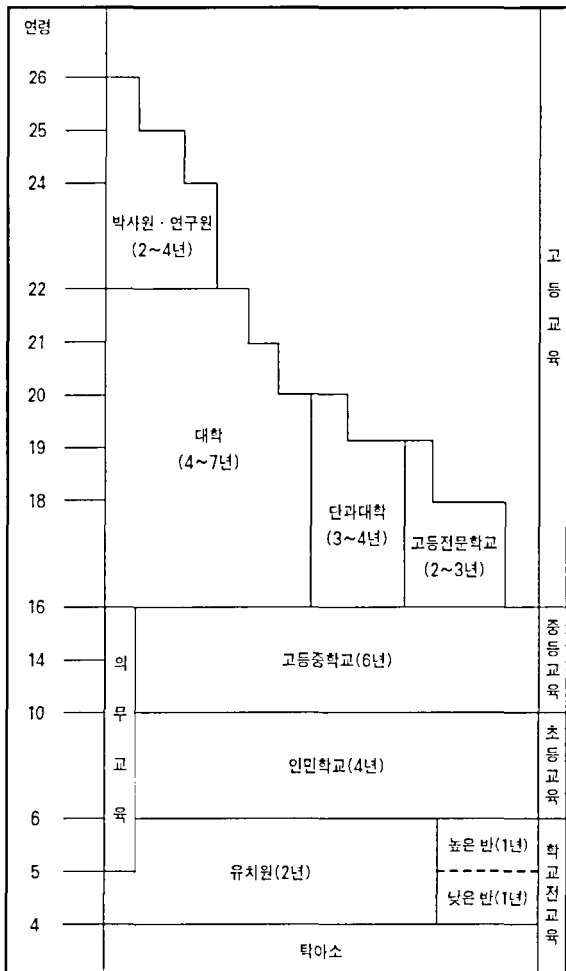
교육체계

- 교육정책 수립과 총괄적 지도·통제는 노동당 '과학교육부'에서 하며 정책집행과 교육행정 업무는 '교육성'에서 담당
- 학제는 4-6-4(7)제로 되어 있으며 유치원 높은반(1년)부터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까지 11년제 의무교육 시행

교과과정

- '주체사상', '혁명역사' 등을 배우는 정치사상교육과 과학기술, 수학 등을 학습하는 기술교육 등으로 편성
-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기술교육에서 새로운 지식교육이 강화되면서 컴퓨터 및 외국어(영어) 교육을 강조

교육 체계도



보건 · 의료정책 및 시설

보건 · 의료정책

- 북한은 표면상 '무상치료제'를 일반화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의약품 부족, 의료시설 낙후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경제난, 식량난 지속으로 의료 환경이 더욱 악화

의료시설

- 일반병원과 특수병원(결핵, 정신병원 등)이 있으며, 시·군단위 1개소씩 있는 위생방역소에서는 위생과 방역업무 전담

의료시설 규모

유형	소재지	의사수	진료과목	병상	주요장비
도 의학 대학병원	도 인민위 소재지	약 200명	전과목	800~1,200	기본진료 및 치료용전장비
시·군 인민병원	시·군 인민위 소재지	약 50명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방사선과, 실험과, 물리치료과, 결핵과, 간염과, 구강과, 고려치료과(14개과)	100~200	엠브란스, X-선 기자재
리 인민 병원	리 인민위 소재지	10명 이내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산부인과, 고려치료과(6개과)	5~20	규모가 큰 경우 X-선 기자재
진료소	산업장, 협동농장, 부락	1~2명		1~2	

출판·보도 현황

- 북한에는 우리의 상업지 성격의 신문은 없으며, 다만 노동당·정권기관·사회단체 등이 발행하는 기관지가 존재

주요신문

신문명	발행기관	비고
노동신문	노동당	면수: 6면, 연중무휴 조건 부수: 약 1백50만부
민주조선	내각	면수: 4면, 월요일 휴간
청년전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면수: 4면, 부수 약45만부
평양신문	평양시 당위원회	면수: 4면 영문판: 'The Pyung Yang Times'

- * 그 밖에 인민무력부와 총정치국이 발간하는 '조선인민군' 등이 있으며, 각 도당위원회 기관지인 도 일보는 '평양신문' 을 포함하여 11개지 발행

주요 방송·통신

구 분		방송시간	성 격
라디오	조선중앙방송	22시간	북한의 대표적인 방송으로써 대내외 정규방송
	평양방송	23시간 30분	대남·대외방송
	평양FM방송	평일 : 8시간 공휴일 : 24시간	대내외, 클래식 음악 전문
	구국의 소리방송 (민민전)	16시간	대남 흑색선전 방송
	국제방송	약4시간	대외용(영어·중어·노어 등)
TV	조선중앙TV	평일 : 6시간 공휴일 : 13시간	대내외 정규방송(위성 송출)
	만수대TV	토요일 : 4시간 공휴일 : 11시간	평양시 시민 및 외국인 대상, 예술 및 영화 전문
	교육문화TV	평일 : 3시간 공휴일 : 10시간	대내 방송, 교육·문화 전문
통신	조선중앙통신사 (KCNA)	전세계를 4개권역(아 시아, 아프리카, 북 미, 유럽권)으로 나누 어 시간대별로 전송	노동당과 정부의 공식적인 성명, 논설 등을 국내방송보다 우선하 여 대외에 발표하는 북한 유일의 국제통신기관

* 라디오 지방방송 : 개성, 원산, 개성, 남포, 사리원 등 10개 방송

명 절

명 칭	구 분		비 고
	국가명절	민족명절	
설 날		1.1	2일 연휴
음 력 설 날		1.1(음)	
김 정 일 생 일	2.16		2일 연휴
국 제 부 녀 절	3. 8		
김 일 성 생 일	4.15		2일 연휴
인민군창건일	4.25		
5 · 1 절	5. 1		
단 오		5.5(음)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	7.27		
해 방 기 념 일	8.15		
추 석		8.15(음)	2일 연휴
정 권 창 건 일	9. 9		
노동당창건일	10.10		
헌 법 절	12.27		
계	10회	4회	총14회, 18일

주요도시

평양직할시(수도)

<p>개 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는 약280만명(1996년), 면적은 2,629km² · 평양주민의 자격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특별 관리 · 19개 구역과 4개 군으로 구성된 평양은 크게 4개 권역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지역 : 대동강과 그 지류인 보통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보통강·모란봉·중·평천구역 등 - 동평양 : 대동강·동대원구역 등 신시가지 형성 - 서평양 : 대규모 체육시설물이 건설된 청춘거리, 신흥주택가로 개발되고 있는 광복거리, 만경대구역 등 - 주변지역 : 승호·용성구역과 4대 인접군
<p>자연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동강과 지류에 의해 형성된 구릉과 비교적 낮은 산지로 구성 · 연평균 기온 9.5℃, 1월 평균기온 -7.8℃, 8월 평균기온 24.4℃, 연평균 강수량 1,000mm 내외
<p>산업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제작공업(운수, 전기, 건설, 탄광, 공작, 정밀기계 등), 연료동력공업(석탄과 화력발전), 방직공업, 신발공업 등이 발달 · 농업은 축산업, 과수업 등이 발달
<p>주요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수대의사당 : 최고인민회의 의사당 · 금수산기념궁전 : 김일성 생전 집무실을 성역화, 김일성 시신 안치 · 인민대학습당 : 과학기술·문화 지식 센터, 북한 최대의 종합 도서관 · 인민문화궁전 : 문화시설(회의실, 연회장, 영화관 등) ·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등
<p>관광명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동문, 모란봉, 부벽루, 율밀대, 동명왕릉, 평양성 등

개성직할시

개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41만(1996년), 면적 1,309km²의 역사적 고도. · 판문점에서 12km, 서울에서 78km 거리
자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쪽으로 송악산, 용호산, 진봉산 등 산악지대, 동쪽으로는 임진강, 서쪽으로는 예성강, 남쪽은 한강과 바다로 둘러싸인 분지 형세 · 연평균 기온 10.4℃, 강수량 1,250mm
산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회석, 금, 동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기계공업, 경공업 발달 · 농업은 벼, 옥수수 등 알곡 생산과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
관광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박물관, 성균관, 박연폭포와 관음사, 공민왕릉·만수산, 송악산·만월대, 선죽교, 개성 남대문 등 많은 유적지 산재

남포직할시

개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86만(1996년), 면적 829km²로 북한 제2의 도시 · 중국 칭따오, 톈진 등과 연결되는 국제항구 · 대동강 하구 북쪽에 위치. 평양에서 44km로 평양-남포간 고속도로와 대동강을 이용한 하천운수가 발달
자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동강이 흘러 퇴적된 구릉과 평야로 구성. · 연평균 기온 10℃, 1월 평균기온 -6.5℃, 8월 평균기온 24.4℃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900mm 내외
산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철, 제강 및 비철금속제련공업 중심, 기계·조선·금속·유리공업 발달 · 조기, 갈치 등 어류잡 중심으로 한 근해수산업, 축산업
관광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감문 : 대동강 하구를 가로막아 건설한 8km의 댐 · 외우도 해수욕장, 평양골프장 등

나산직할시

개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년 9월 기존의 나진시와 선봉군을 통합하여 직할시 승격 · 1991년 12월 자유경제무역지대 지정, 1998년 경제무역지대 로 명칭 변경
자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부와 서부에는 송진산, 보로지봉, 화대산 등 비교적 높은 산이 위치해 있고, 동부와 두만강 연안은 구릉성 산지이며, 남부는 동해에 면해 있음. · 연평균 기온 6.2℃, 강수량 760mm 내외
산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경지면적이 적고 벼농사보다는 옥수수 등 밭농사와 축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양식업 등 수산업도 발달 · 화학, 전력 및 기계, 목재공업 발달 · 경제무역지대 로 지정 후 수출가공기지, 국제화학중계지, 국제관광도시로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개발계획 추진
관광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포리 유적, 충무공 이순신 장군 승전대비 등 · 우암산 벚나무 군락, 원당 해당화, 선봉알섬, 자연호수(서번포, 동번포) 등

대남

VII

통일의 원칙	91
연방제 통일방안의 변천	92
대남 전략전술	93
조직 및 기능	94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대화	96
주요 대남제의 일지	98

통일의 원칙

조국통일 3대원칙 (7·4 남북공동성명, 1972.7.4)

- ① 자주 ② 평화통일 ③ 민족대단결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 1993.4.7)

- ① 민족대단결로 자주, 평화, 중립적 통일국가 창립
- ② 민족애와 민족자주 정신에 기초하여 단결
- ③ 공존·공영·공리 도모,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 인정 및 존중
- ④ 모든 형태의 정쟁 중지, 외세의 침략에 공동대처
- ⑤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가지고 신뢰하고 단합
- ⑥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고 서로 다른 주의주장에 대한 배척 중지
- ⑦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 보호 및 민족대 단결을 도모하는 데 이롭게 이용할 것을 장려
- ⑧ 접촉, 왕래, 대화를 통해 전민족의 단합
- ⑨ 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진민적인 연대성 강화
- ⑩ 민족대단결과 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

민족대단결 5대 방침 (김정일서한, 1998.4.18)

- ① 민족자주 원칙에 기초한 민족대단결
- ② 애국애족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단결
- ③ 남북관계 개선(연북 화해정책으로 전환)
- ④ 외세의 지배와 간섭배제, 외세와·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 일세력 반대투쟁(미군철폐수)
- ⑤ 남·북·해외 온민족의 내왕접촉과 대화발전 및 연대연합 강화

※ 조국통일 3대헌장 :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연방제 통일방안의 변천

연 대	명 칭	내 용
1960년대	남북연방제	<p>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통해 통일 실현, 총선 불가능시 과도적 대책으로 남북연방제 실시(1960.8.14. 김일성 연설)</p> <p>- 당분간 남북의 현 정치제도 유지하며 군사·외교 분야 독자적 활동 보장</p>
1970년대	고려연방공화제	<p>단일 국호(고려연방공화국)에 의한 연방제 실시 및 UN 동시가입 주장(1973.6.23. 김일성 연설)</p> <p>- 일종의 군중집회 형태의 '대민족회의' 에서 군사·외교 등 전분야 정책 결정</p>
1980년대 이후	1980년대 : 고려민주연방 공화국 창립방안	<p>사상·제도를 상호 인정·용납한 기초 위에서 남북이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지역자치를 실시 (1980.10.10, 제6차 당대회)</p> <p>- 남북한 동수의 대표들과 해외동포 대표들로 구성 되는 '최고민족연방회의' 조직하고 '연방상설위원회'가 정치·외교·군사권을 통일적으로 행사 하면서 남북 지역정부들을 지도</p>
	1990년대	<p>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국가연합'적 요소를 가미, 점진적인 연방제 완성을 주장(1991년 김일성 신년사)</p> <p>-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실현</p> <p>- 잠정적으로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 후 중앙정부의 기능을 강화 →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p> <p>- 통일방도 확정을 위한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소집</p>
	2000년	<p>2000년 6월 남북 양 정상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6·15 남북공동선언)</p>

혁명적 민주기지론

- 북한지역의 혁명역량을 강화하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전 한 반도의 공산혁명을 완수한다는 전략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

- 전 한반도 혁명의 앞단계로 남한에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한 뒤, 2단계로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킨다는 단계적 혁명론

3대 혁명역량 강화

- 남조선혁명을 완성하는 실천적 요소로서 북한 자체의 혁명기지역량, 남한 혁명역량, 그리고 국제적 혁명지원역량 강화 강조

통일전선전술

- 공산당이 자체 힘만 가지고는 적을 타도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필요한 동조세력을 획득하고 그들과 잠정적인 동맹체를 형성하여 투쟁하는 전통적인 투쟁기법

민족대단결론

- '민족'이라는 혈연적 동질성을 내세워 남한내에 광범위한 통일전선조직을 구축하는 한편 반미·반정부투쟁을 신동하여 한미간 안보협력체제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

조직 및 기능

통일전선부

- 통일전선공작과 남북대화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대남 사업의 핵심부서

대외연락부

- 지하당 건설 등 대남공작 구축, 통일전선 형성, 간첩교육 및 파견 등 공작진술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

35호실

- 대외 및 대남 정보수집, 해외 간첩공작 등 진담

작전부

- 공작원 교육훈련, 침투 공작원 호송·안내 및 복귀

외곽단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 1949년 72개 정당·사회단체를 망라해 결성한 통일관련 노동당 진위기구로 북한은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 력량을 묶어 세운 정치 조직체”로 성격을 규정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 1961년 남한의 4·19 혁명 이후 분출된 통일논의를 대남전략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 결성하였으며, 대남 통일전선 형성, 남북 회담업무 진반을 주관

한국민족민주전선(민민전)

- 남한내 지하당 조직으로 선전하고 있는 남한내 일부 좌경세력에 대한 이념적 지도 임무를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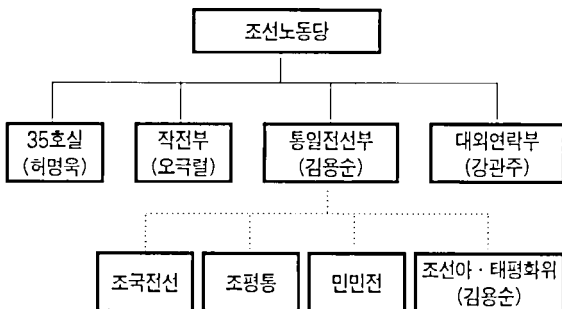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평화위)

- 1994년 아·태 지역 미수교 국가들과 정치·경제·문화교류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설립하였으며 최근에 와서는 남북간의 각종 민간교류와 경제협력 업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 1998년 6월 8일 북한이 8·15 대축전 제의에 앞서 북한의 경제, 사회·문화계, 종교계 등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로 구성된 대남 통일전선단체의 하나로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1998.4)에서 언급된 '온 민족의 접촉·대화와 연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

조직도



남북정상회담 개최

- 분단 55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2000.6.13~15)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
- '6·15 남북공동선언'의 주요내용
 - ①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
 - ②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 ③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진향 장기수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
 - ④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
 - ⑤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

남북대화의 지속

-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장관급 회담을 중심으로 분야별 회담이 총20여회 개최되어 실질 협력문제를 협의
- ※ 장관급회담(6회), 국방장관회담(1회), 군사실무회담(5회), 경제협력추진위원회(1회), 남북적십자회담(3회) 등

· 남북정상회담 이후 휴전선에서의 비방·중상이 중지되는 등 과거에 비해 남북간 긴장이 현저히 완화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금강산관광사업 활성화 등에 합의하였고, 경협관련 4개 합의를 채택

· 임동원 대통령 특사 방북(2002.4.3~6)을 통해 6개항의 공동 보도문에 합의

① 상대방을 존중하며 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

② 남북공동선언 합의에 따라 남북관계 원상회복

③ 동해선 철도·도로와 경의선, 문산-개성간 도로 빨리 연결

④ 남북간 대화협력 적극 추진(제2차 경협추진위 개최 일정 등 5개 사항 합의)

⑤ 남북 군사 당국자간 회담 재개

⑥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협력

주요 대남제의 일지

일 자	내 용
1948. 4.30	전조선 정치회의 소집 및 민주주의 임시정부수립 제의(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1949. 6.28	입법기관 구성을 위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등 8개항의 통일방안 제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결성대회)
1954. 4.27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에 대한 3개항의 통일방안 제의(외무상 남일)
1954. 6.15	남북조선 군축 및 전쟁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협정 체결 제의(외무상 남일)
1955. 8.14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극동회의 소집 제의(8·15 경축대회, 김일성)
1956. 4.28	남북조선의 정권당국간 무력불행사 선포 제의(조선노동당 제3차대회)
1957. 1.31	남북 적십자단체 대표들간의 정기 서신교환 제의(조선적십자회 위원장 홍명희)
1957. 9.20	남북조선대표참가 유관국 회의소집 제의(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 회의, 김일성)
1960. 8.14	남북 연방제 제의(김일성)
1962. 6.21	남북조선 정권 당국자 무력불행사 협정체결 제의(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1차 회의)
1963. 9. 8	남북불가침조약 체결 제의(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용건)
1967. 1. 4	남조선 당국자와 통일문제 조건부 협상 제의(김일성)
1971. 4.12	평화통일 8개 방안 제의(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 외무상 허담)
1973. 4. 5	남북평화협정 체결 제의(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 총리 김일)
1973. 6.23	조국통일 5대강령 제시(김일성)
1977. 2. 8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의(인민군 부총참모장 김익현)
1979. 2.20	제35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통일팀 출전을 위한 남북탁구 협회대표회담 제의(조선체육지도위 위원장 및 조선탁구협회 회장)
1980.10.10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의(노동당 제6차대회, 김일성)

일 자	내 용
1984. 1. 10	남·북 및 미국 3자 회담 제의(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연합회의)
1984. 9. 8	남조선 수재민 구호물자 제공 제의(조선적십자회 위원장 손성필)
1985. 1. 9	남북 부총리 접촉 제의(정무원 부총리 김한)
1985. 4. 9	남북 국회회담 제의(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4차 회의)
1985. 5. 28	남북 적십자예술단 상호방문 제의(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1986. 6. 9	남·북·미국 3군사당국자 회담 제의(인민무력부장 오진우)
1986. 6. 23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 창설 협상 제의(정부)
1986. 12. 30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 김일성)
1989. 11. 30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3개항 실천초치 제의(외교부)
1990. 1. 1	남북 자유왕래 및 전면개방 실현 위한 남북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 소집 제의(김일성)
1990. 1. 17	IPU 총회(제84차) 남북단일대표단 구성 참가 제의(의회 그루백 위 위원장 양형섭)
1990. 5. 24	조국통일 5개방침 제시(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 김일성)
1990. 5. 31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한 10개항 제시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 연합회의)
1991. 7. 30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위한 제안(외교부)
1993. 4. 7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제시(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
1993. 5. 25	남북최고위급의 특사교환 제의(정무원 총리 강성산)
1994. 4. 11	전민족대단결 방도 모색을 위한 '민족대회' 소집 제의(당·정·사회단체 연합회의)
1994. 6. 17	남북정상회담 개최용의 표명(김일성, 카터 전 미 대통령에게 의 사전달)
1995. 3. 29	'8·15 민족통일대축전' 관련 민간급접촉 제의(민족통일대축전 북측 준비위원회)
1995. 5. 26	남한의 쌀 제공 검토용의 표명(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 이성복)
1998. 4. 18	'민족대단결 5대방침' 발표(김정일 '서한' 형식)
2001. 1. 10	'올해를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할 것'을 제의(우리민족끼리 통일 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
2002. 1. 22	'3대 호소', '3대 제의'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

남북한 비교

VIII

경제지표 비교 103

외교활동 비교 107

군사력 비교 108

통일방안 비교 109

경제지표 비교

주요 경제지표 비교

(2001년 기준)

	단 위	북한(A)	남한(B)	B/A(배)
인 구	천명	22,253	47,343	2.1
명 목 G N I	10억원	20,287.0	543,874.6	26.8
1인당 G N I	만원	91.2	1,148.8	12.6
경 제 성 장 륜	%	3.7	3.0	-
대 외 경 제				
무 역 총 액	억달러	22.7	2,915.4	128.4
(수 출)	"	6.5	1,504.4	231.4
(수 입)	"	16.2	1,411.0	87.1
(무역액/명목GNI)	%	14.4	69.2	-
대 미 환 율	원/달러	2.21	1,290.83	-
외 채	억달러	N.A.	1,198.6	N.A.
(외채/명목GNI)	%	N.A.	28.5	-
예 산 규 모*	억달러	98.1	768.3	7.8
에 너 지 산 업				
석 탄 생 산 량	만톤	2,310	382	0.2
발 전 용 량	만kw	775	5,086	6.6
발 전 량	억kwh	202	2,852	13.1
원유도입량	만톤	58	11,724	202.1

* 북한은 결산 기준, 남한은 중앙정부 일반회계예산 기준

	단위	북한(A)	남한(B)	B/A(배)
농수산물생산량				
곡 물	만톤	394.8	620.0	1.6
(쌀)	"	168.0	551.5	3.3
수 산 물	"	74.6	266.5	3.6
광 산 물 생 산 량				
철 광 석	만톤	420.8	22.7	0.05
비 철 금 속	"	9.2	114.0	12.4
주요공산품생산량				
자 동 차	만대	0.57	294.6	516.8
강 철	만톤	106.2	4,385.2	41.3
시 멘 트	"	516.0	5,201.2	10.1
비 료	"	54.6	350.0	6.4
화 석	"	2.7	234.0	86.7
사회 간접 자본				
철도총연장	km	5,224	3,125	0.6
도로총연장	km	23,963	91,396	3.8
항만 하역 능력	만톤	3,550	46,960	13.2
선박보유	만톤	85.0	659.3	7.8

국민총소득(GNI) 변화추이

(단위 : 명목GNI 억달러, 1인당GNI 달러)

연도	남한		북한		남/북(배)	
	명목 GNI	1인당 GNI	명목 GNI	1인당 GNI	명목 GNI	1인당 GNI
1995	4,881	10,823	223	1,034	21.9	10.5
1996	5,183	11,380	214	989	24.2	11.5
1997	4,740	10,307	177	811	26.8	12.7
1998	3,121	6,723	126	573	24.8	11.7
1999	4,007	8,551	158	714	25.4	12.0
2000	4,552	9,628	168	757	27	13
2001	4,213	8,900	157	706	26.8	12.6

무역총액 변화추이

(억달러)

연도	남한	북한	남/북(배)
1995	2,601.8	20.5	126.9
1996	2,800.5	19.8	141.4
1997	2,807.8	21.8	128.8
1998	2,255.9	14.4	156.7
1999	2,634.4	14.8	178.0
2000	3,327.5	19.7	168.9
2001	2,915.4	22.7	1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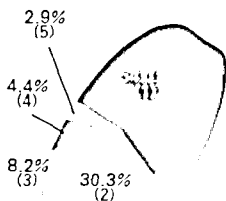
제조업 생산지수 변화 추이

(199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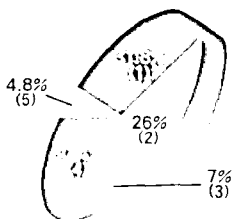
연 도	남	한	북	한
		증감률		증감률
1995	100.0	12.0	100.0	-5.2
1996	108.3	8.3	91.1	-8.9
1997	113.2	4.5	75.8	-16.8
1998	105.7	-6.6	73.4	-3.2
1999	132.1	25.0	79.7	8.6
2000	154.7	17.1	80.4	0.9

산업구조 비교 (2001년)

1 서비스업 2 광공업 3 건설업 4 농림어업 5 전기가수도업



남한



북한

외교활동 비교

수교현황 비교

(2002.4월 현재)

구 분	남 한	북 한	동시수교
아 주	34	23	22
미 주	34	22	21
구 주	51	45	44
중 동	15	11	11
아프리카	51	50	50
계	185	151	148

* 세계 총 191개국(대만 제외)에서 남북한을 제외한 189개국 중, 남한의 미수교국은 4개국(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모나코)임.

국제기구 가입현황 비교

(2002.4월 현재)

구 분	UN 및 산하기구	UN 전문기구	UN 독립기구	정부간기구	합계
남한	5	16	3	70	94
북한	4	11	0	12	27

* 우리는 북한가입 27개 기구에 모두 가입

재외공관 현황 비교

(2002.4월 현재)

지 역	상주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		계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아 주	22	12	14	2	1	0	37	14
미 주	16	3	13	-	1	1	30	4
구 주	27	11	2	1	2	6	31	18
중 동	12	3	-	-	-	2	12	5
아프리카	14	9	-	-	-	-	14	9
계	91	38	29	3	4	9	124	50

군사력 비교

(2000년 기준)

구분		남한		북한	
병력	지상군	56만여명	69만여명	100만여명	117만여명
	해군 ¹⁾	6.7만여명		6만여명	
	공군	6.3만여명		11만여명	
주요전력	부대	군단	11개	19개	
		사단	49개 ²⁾	67여개 ³⁾	
		여단	19개	76여개(포병 30여개 여단 제외)	
	장비	전차	2,360여대	3,700여대	
		장갑차	2,430여대	2,200여대	
		야포	5,200여문 ⁵⁾	12,700여문	
		헬기	610여대	-	
	해군	수상전투함	160여척	430여척	
		지원함	20여척	470여척 ⁶⁾	
		잠수함(정)	10여척	90여척 ⁷⁾	
항공기		70여대	-		
공군	전투기	560여대	870여대		
	특수기	40여대			
	지원기	210여대		850여대 ⁸⁾	
예비전력(병력)		304만여명 ⁹⁾		748만여명 ¹⁰⁾	

* 1) 해병대 포함 2) 해병대 사단 포함 3) 미사일 사단 미포함 4) 보병, 기보, 전차, 특수전, 경비, 해병, 강습 등 기동/전투여단 포함 5) 야포 : 방사포(MLRS)포함, 유도무기 제외 6) 해상경비정대 소속 해상경비정 170여척 포함 7) 잠수정 40여척 포함 8) 공군에서 통합 운용 9) 전역 8년차 예비군까지 10) 교도대,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인민보안성 요원 포함

* 자료출처 : 2001년도 국방주요자료집(국방부)

통일방안 비교

구분	남한	북한
명칭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89)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1980)
통일철학	자유민주주의	주체사상
전제조건	없음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 한편 2001.8.15 범민련 강령 개정 시 '연방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고려연방제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을 모두 삭제
통일원칙	자주·평화·민주	자주·평화·민족대단결
통일과정	화해협력 → 남북연합 → 1민족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 과정	중간과정 없이 통일국가 수립 * 한편 1990년대 들어와 잠정적으로는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 부여, 점차 중앙정부의 기능을 높여 나가자고 주장 - 낮은 단계의 연방 → 연방국가
과도체제	남북연합 : 현존 2체제 2정부를 그대로 유지 하면서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 등 남북정부간 협력기구 구성·운영	없음 * 한편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을 설명(2000.10.6)하면서 남북의 현정부가 내정·군사·외교권을 비롯,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민족통일기구를 내오자'고 주장
통일국가 실현절차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	연석회의 방식에 의한 정치협상
통일국가의 형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국가 * 제도통일은 후대에 맡길 문제
통일국가의 미래상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	자주적·평화적·중립적 통일국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남북 교류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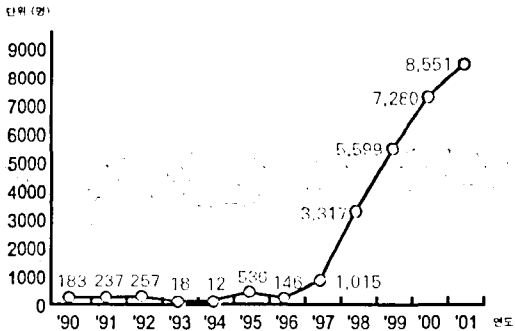
IX

남북 왕래인원 추이	013
남북 교역 추이	014
대북지원 추이	015
남북 이산가족교류 추이	016

남북 왕래인원 추이

북한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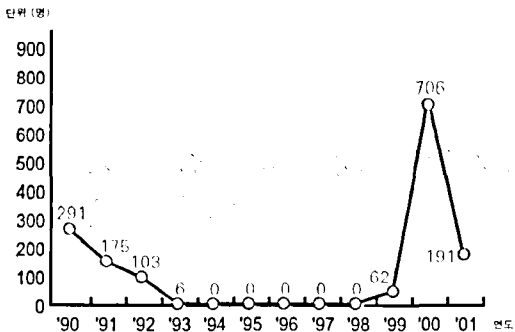
연도별 방북인원 추이



- 2002년 1월~4월 방북인원: 1,804명
- 금강산 관광객(1988.11~2002.4): 462,643명

남한방문

연도별 방남인원 추이



남북 교역 추이

(단위 :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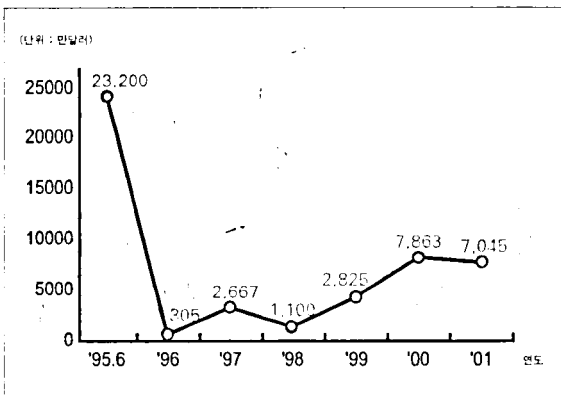
연도	반입	반출	계	교역수지	비고
1989	18,655	69	18,724	△18,586	-
1990	12,278	1,188	13,466	△11,090	-
1991	105,719	5,547	111,266	△100,172	1991~ 2001 연평균 △57,325 (△115,612)
1992	162,863	10,563	173,426	△152,300	
1993	178,167	8,425	186,592	△169,742	
1994	176,298	18,249	194,547	△158,049	
1995	222,855	64,436	287,291	△158,419 (△169,414)	
1996	182,400	69,639	252,039	△112,761 (△127,016)	
1997	193,069	115,270	308,339	△77,799 (△133,049)	
1998	92,264	129,679	221,943	37,415 (△40,629)	
1999	121,604	211,832	333,437	90,228 (△53,929)	
2000	152,373	272,775	425,148	120,402 (△61,315)	
2001	176,170	226,787	402,957	50,617 (△110,639)	
합계	1,794,715	1,134,459	2,929,175	△660,256 (△1,301,409)	

* ()내는 경수로 물자, 대북 무상지원, KEDO 중유, 협력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입 금액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임.

* 2002년 1월~4월 남북교역액 : 129,987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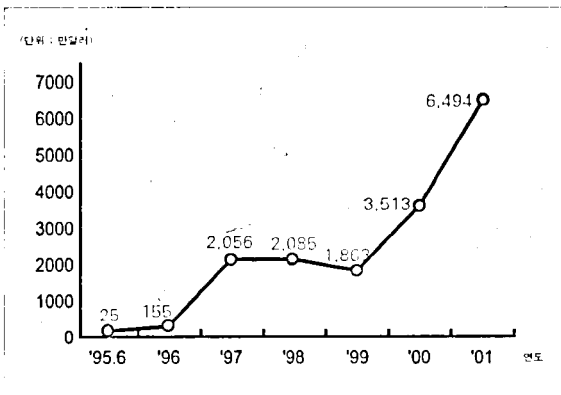
대북지원 추이

정부차원 대북지원 추이



* 2002년 1월~4월 : 1,632만달러

민간차원 대북지원 추이



* 2002년 1월~4월 : 1,404만달러

남북 이산가족교류 추이

연도별 교류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총 계	
민 간 차 원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2,527
	서신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6,716
	제3국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165	771
	방북상봉										1	5	4	5	15
당 국 차 원	생사확인	65										792	744	1,601	
	서신교환											39	623	662	
	방남상봉	30										201	100	331	
	방북상봉	35										205	100	340	

2000 ~ 2002년 민간·당국차원 교류 현황

(단위 : 건)

구 분	이산가족 찾기신청	생사확인	서신교환	제3국 상 봉	방북상봉	방남상봉
2000	84,757	1,239	1,023	148	209	201
2001	5,116	952	1,202	165	105	100
2002. 4	465	49	273	67	199	-

부록

X

사회주의 헌법	(142)
주요 인물 약력	(143)
북한 주요기구 등 영문표기	(144)

사회주의 헌법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 (1972. 12. 27)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수정 (1992. 4. 9)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1998. 9. 5)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 혁명투쟁을 조직 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진동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 국가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노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 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 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어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온 사회

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진변시키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 놓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시었으며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었다. 김일성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외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빨럭불가담운동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었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다.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었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융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제1장 정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

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 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동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 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노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 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균중노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행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범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 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인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 생활과 조국의 통일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

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에 맞는 물질 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책을 국가 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 대중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노동은 착취한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노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노동조직을 잘하고 노동규률을 강화하여 노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노동하는 나이

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옹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건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 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 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인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옹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받

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선운영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예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에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건전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

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모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 발전추세와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 교육의 과학리론 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

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 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 체육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4장 국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 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에서 진군간부화, 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인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 한다.

제70조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요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를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

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
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
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
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
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
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
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율
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아끼고 사랑
하며 온갖 탐오 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
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국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국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
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
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의 휴
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
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
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가 채택한 중요부문 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

환 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재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 총리의 재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한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 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제2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련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 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0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 수 있다.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임무

를 계속 수행한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 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 채택하며, 채택 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 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 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결정, 지식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내각 총리의 재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나오거나 고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 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사업을 돕는 부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4절 내각

제117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의 필요한 성원으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 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노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 유지, 국가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 전원회의는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 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23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5조 내각은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26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 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이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결정, 지시집행 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30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5절 지방인민회의

제13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2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나

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6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인민회

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 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법령, 정령,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견인,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실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제7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8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9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0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 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국가와 사회 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제151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2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4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5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15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6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 하여 수행한다.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땅아올러감은 비이삭의 타원형 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폭이 있고 붉은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는 비는 1대 2이다.

제16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주요인물 약력

당(12명)

이름	현 직
김 정 일	당총비서, 국방위원장
강 관 주	대외연락부장
장 성 택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계 응 태	당비서 : 공안담당
정 하 철	당비서 : 선전담당
김 국 태	당비서 : 간부담당
김 기 남	당비서
김 용 순	당비서 : 대남담당
김 중 린	당비서 : 근로단체담당
연 형 목	국방위 위원, 자강도당 책임비서
전 병 호	국방위 위원, 당비서 : 군수담당
한 성 룡	당비서 : 경제담당

최고인민회의(9명)

이름	현 직
최 태 복	의장, 당비서
김 영 남	상임위원장
김 영 대	상임위 부위원장, 사민당위원장
김 영 주	상임위 명예부위원장
김 윤 혁	상임위 서기장
박 성 철	상임위 명예부위원장
양 형 섭	상임위 부위원장
여 원 구	부의장
장 철	부의장

내각(13명)

이름	현직
홍성남	총리
곽범기	부총리
조창덕	부총리
이광근	무역상
김병륜	중앙재판소장
김영일	육해운상
김용삼	철도상
박명철	체육지도위원장
백남순	외무상
백학립	인민보안상
오광홍	전기석탄공업상
김창식	농업상
최영림	중앙검찰소장

군(12명)

이름	현직
조명록	총정치국장, 국방위 제1부위원장, 차수
김영춘	총참모장, 국방위 위원, 차수
김일철	인민무력상, 국방위 위원, 차수
이을설	호위사령관, 국방위 위원, 원수
김철만	제2경제위원장, 국방위 위원
박기서	평양방어사령관, 차수
박재경	인민무력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대장
현철해	인민무력성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대장

이름	현 직
이 명 수	총참모부 작전국장, 대장
원 응 희	보위사령관, 대장
김 두 남	금수산기념궁전 관장, 대장
오 극 렬	당 작전부장, 대장

기타(11명)

이름	현 직
강 영 섭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장
김 영 성	내각 책임참사
박 태 호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
송 호 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안 경 호	조평통 서기국장
양 만 길	평양시 인민위원장
유 미 영	천도교 청우당 위원장
장 응	체육지도위 부위원장, IOC 위원
장 재 언	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박 순 희	「여맹」 중앙위원장
정 운 업	민족경제협력연합회 회장

김정일(金正日)

· 현 직 국방위 위원장, 당 총비서, 인민군 최고사령관,
공화국 원수, 당 중앙위원,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 출 생 1942. 2. 16 하바로프스크(소련명:유라)
※ 북한은 양강도 백두산 밀영(삼지연)출생 주장

· 학 력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과

· 주요경력

1945. 11 소련에서 귀국

1949. 9 생모 김정숙 사망

1950~52 중국 길림학원(6.25당시 자강도 장자산 피신 주장)

1964. 6 당 조직지도부 지도원

1965. 김일성 인도네시아 방문시 동행

1967. 당 선전선동부 과장

1969.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1971. 당 문화예술부 부장

1973. 9 당 중앙위 비서(조직 및 선전담당) 겸 조직지도부 부장
3대혁명소조운동 총책임자(제5기 제7차 당중앙위
진원회의)

1974. 2 당 정치국 위원(1974년부터 “친애하는 동지”
“당중앙”으로 호칭)

1975. 2 공화국영웅 칭호

1980. 10 당 중앙위원,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
국 비서, 당 중앙군사위 위원

1983. 6 중국 비공식 방문

1990. 5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 1991. 12 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제6기 제19차 당중앙위 전원회의)
- 1992. 4 공화국 인수
- 1993. 4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대(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 차회의)
- 1997. 10 당 총비서 추대(당중앙위와 당중앙군사위 공동 명의)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국방위원회 위원장(재추대)

· 주요저작

- 저서 · 1973. 4. 11 영화예술론
- 1990. 11. 30 무용예술론
- 1991. 5. 21 건축예술론
- 1991. 7. 17 음악예술론
- 1991. 10. 16 미술론
- 1992. 1. 20 주체문학론

- 논문 · 1982. 3. 31 주체사상에 대하여
- 1992. 10. 10 혁명적 당 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 1994. 11. 1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 1995. 6. 19 사상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 답화 · 연설 · 서한(김일성 사후분)
- 1994. 10. 16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1995. 9. 21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 1996. 8. 24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 사상과 영도 업적을 빛내여 나가자.
- 1997. 6. 19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 1997. 8.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 1998. 4. 18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 2000. 1. 27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발진을 위한 대자연 개조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애국 위업이다.

강관주:일명강주일

- 현 직 당 대외연락부(구 사회문화부) 부장,
「조평통」 부위원장
- 출 생 1930. 7. 15 평남 대동
- 학 력 김일성 종합대학
- 주요경력 1989. 3 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
1990. 8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1997. 2 당 대외연락부장(구 사회문화부)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장성택(張成澤)

- 현 직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당 중앙위 위원
- 출 생 1946. 2. 6 강원도 친내
- 학 력 김일성 종합대학, 김일성 고급당학교
- 회담경력 2000. 6 남북정상회담시 고변오찬 등 참석
- 주요경력 1985. 7 당 청소년사업부 제1부부장
1989. 6 당 중앙위 후보위원
1992. 4 김일성 훈장 수훈
1992. 12 당 중앙위원
1995. 11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계응태(桂應泰)

- 현 직 당 비서국 비서(공안담당), 당 정치국원, 당 중앙위 위원
- 출 생 1925. 2. 25 평남 평원
- 학 력 남만주대학, 소련 고급당학교
- 주요경력 1976. 12 정무원 부총리
1977. 1 당 정치국 후보위원, 정무원 부총리 겸 무역부장
1977. 12 당 정치국 위원, 중앙인민위 위원
1981. 5 정무원 경공업 위원장
1985. 8 평안남도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장
1986. 2 당 비서국 비서(공안담당)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정하철(鄭夏哲)

- 현 직 당 비서국 비서(선전담당), 당 중앙위 위원
- 출 생 1933. 5. 25 강원도 문진
- 학 력 김일성 종합대학
- 회담경력 2000. 8 언론사 대표단 방북시 각종 행사 참석
- 주요경력 1990. 2 중앙방송인장
1991. 10 기자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1991. 12 당 중앙위 후보위원

1992. 12 당 중앙위원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2000. 8 당 선전선동부장
2001. 9 당 비서국 비서

김국태(金國泰)

- 현 직 당 비서국 비서(간부담당), 당 간부부장,
당 중앙위 위원, 최고인민회의 자격심사 위원장
- 출 생 1924. 함북 청진
- 학 력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 주요경력 1984. 8 당 교육부 부장
1985. 6 당 간부부 부장
1992. 12 당 중앙위 비서국 비서(간부담당)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1998. 9 최고인민회의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김기남(金基南)

- 현 직 당 비서국 비서, 당 중앙위 위원
- 출 생 1926. 8 원산
- 학 력 김일성 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 주요경력 1980. 10 당 중앙위 위원
1987. 9 당 중앙위 제1부부장
1989. 12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 부장

1992. 12 당 비서국 비서(선진담당)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김용순(金容淳)

· 현 직 당 비서국 비서(대남담당), 당 중앙위 위원,
아·태평화위원장, 「조핑통」 부위원장,
조선반핵평화위원장

· 출 생 1934. 7. 5 평남 평인

· 학 력 김일성 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 회담경력 1994. 6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 북측대표

1998. 10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일행과 금강산
종합개발 서민계약 체결

2000. 6 남북정상회담시 공항영접, 1·2차 정
상회담, 합의서 서명식 등 주요행사 참석

2000. 8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북 언론사 대표
단 면담 배석

2000. 9 김정일 국방위원장 특사로 서울·제주
방문

2002.2.4 임동원 특사와 회담 및 김정일 국방위
원장의 특사 면담시 배석

· 주요경력 1988. 11 당 중앙위 국제부 부장

1990. 5 당 중앙위 비서국 비서(국제담당)

1990. 6 세계인민과의 연대성위원회 위원장

1991. 7 조·일우호친선협회 최고고문

- 1992. 4 최고인민회의의 외교위 위원장
- 1992. 12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비서국 비서
(대남담당)
- 1993. 4 최고인민회의의 통일정책위 위원장,
「조핑통」 부위원장
- 1994. 7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의 제10기 대의원

김중린(金仲麟)

- 현 직 당 비서국 비서(근로단체담당), 당 중앙위 위원
- 출 생 1924. 평북 벽동
- 학 력 중앙당학교, 소련 고급당학교
- 주요경력 1970. 11 당 중앙위 위원, 정치국 위원,
비서국 비서(대남담당)
- 1978. 1 당 비서국 비서(대남담당) 겸
통일진선부 부장
- 1990. 1 당 비서국 비서(근로단체담당)
- 1998. 7 최고인민회의의 제10기 대의원

연형묵(延亨默)

- 현 직 자강도당 책임비서, 국방위 위원,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후보위원
- 출 생 1931. 11. 3 함북 경원
- 학 력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 종합대학, 체코 프라하공대

- 회담경력 1990. 9~1992. 9 고위급회담 북측단장(1-8차)
2000. 6 남북정상회담시 고별오찬,
공향환송행사 등 참석
- 주요경력 1980. 10 당 중앙위 위원, 정치국 위원,
비서국 비서
1986. 12 당 비서국 비서
1988. 12 정무원 총리
1992. 12 정무원 총리 해임, 당 정치국 후보위원
으로 강등,
자강도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 위원장
1993. 4 중앙인민위 위원
1998. 7 최고인민위의 제10기 대의원
1998. 9 국방위원회 위원

전병호(全炳浩)

- 현 직 당 비서국 비서(군수담당), 당 군수공업부장,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위원, 국방위 위원
- 출 생 1926. 3. 20 함북 무산
- 학 력 만경대혁명학원, 김인성 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 주요경력 1986. 12 당 비서국 비서(군수담당)
1988. 11 당 정치국 위원(보선)
1990. 5 국방위원회 위원,
당 군수공업정책검열부 부장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1998. 9 국방위원회 위원

한성룡 (韓成龍)

- 현 직 당 비서국 비서(경제담당), 당 정치국원,
당 중앙위 위원,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
- 출 생 1923. 함북 명천
- 학 력 만경대혁명학원
- 주요경력 1998. 11 당 정치국 후보위원
1998. 12 당 비서국 비서(경제담당)
1990. 5 당 정치국 위원, 중앙인민위 위원
1994. 3 당 중앙위 경제정책검열부 부장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1998. 9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예산위원회
위원장

최태복 (崔泰福)

- 현 직 최고인민회의 의장, 당 비서국 비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 위원
- 출 생 1930. 12. 6 남포
- 학 력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동독 라이프치히공대
- 회담경력 2000. 6 남북정상회담시 공항영집 등 참석
- 주요경력 1986. 12 당 중앙위 위원,
당 비서국 비서(교육담당)

- 1990. 5 당 정치국 후보위원
- 1992. 1 당 과학교육부 부장
- 1992. 12 당 비서국 비서(국제담당) 및
당 국제부 부장
- 1993. 4 최고인민회의 외교위 위원장
- 1993. 12 당 비서국 비서(교육담당),
당 과학교육부 부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영남(金永南)

- 현 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당 정치국원,
당 중앙위 위원
- 출 생 1928. 2. 4 평양
- 학 력 김일성 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외교학전공)
- 회담경력 1991. 10 제46차 UN총회 참석
이상옥 외무장관과 면담
2000. 6 남북정상회담시 김대중대통령과 공식
면담 등 주요행사 참석
- 주요경력 1974. 6 당 정치국 후보위원
1974. 9 중앙인민위 대외정책위 위원
1975. 2 당 중앙위 비서국 비서
1980. 10 당 중앙위 위원, 정치국 위원, 비서국 비서
1983. 12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 부장
1989. 9 「조평통」 부위원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대:일명김영호

- 현 직 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민족화해협의회 회장,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 회담경력 2000. 6 남북정상회담시 공항영접 등 참석
- 주요경력 1991. 7 조·일 우호친선협회 부회장
1998. 6 민족화해협의회 회장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1998. 8 사회민주당 위원장
1998. 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주(金英柱)

- 현 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당 정치국원, 당 중앙위 위원
- 출 생 1920. 평남 대동군
- 학 력 모스크바종합대학(정경학부)
모스크바 고급당학교 연구반
- 회담경력 1972. 5 이후락 중정부장과 2회 회담
1972. 7 남북조전위 공동위원장

- 주요경력 1966. 10 당 중앙위 정치위 후보위원 겸
비서국 비서
- 1970. 11 당 중앙위 위원,
정치위 위원 겸 비서국 비서
- 1974. 2 정무원 부총리
- 1993. 12 국가 부주석, 중앙인민위 위원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김운혁(金潤赫)

- 현 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 당 중앙위 위원
- 출 생 1926. 평남 양덕
- 학 력 김책공대, 레닌그라드공대
- 회담경력 2000. 6 남북정상회담사 공항영접 등 참석
- 주요경력 1982. 11 황해남도 경제지도위 위원장
- 1986. 6 중앙자재총연합상사 총사장
- 1986. 8 정무원 제1부총리
- 1986. 12 정무원 부총리 겸 건설건재공업위 위원장
- 1988. 2 정무원 건설건재위 위원장 해임
- 1990. 5 정무원 부총리 유임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박성철 (朴成哲)

- 현 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명예부위원장,
당 정치국원, 「조국전선」 공동의장
- 출 생 1913. 9. 2 경북 경주
- 학 력 일본 상지대
- 회담경력 1972. 5 남북조절위 공동위원장 대리
- 주요경력 1961. 5 「조평통」당 중앙위 위원
1967. 12 내각 부수상 겸 외상
1976. 4 정무원 총리
1977. 12 국가 부주석, 중앙인민위 위원
1991. 8 「조국전선」중앙위 공동의장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1998. 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양형섭 (楊亨燮)

- 현 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 위원,
「조국전선」공동의장, 「조평통」 부위원장,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 출 생 1925. 10. 1 함남 함흥
- 학 력 김일성 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경제학과

- 회담경력 2000. 6 남북정상회담시 공항영접 등 참석
- 주요경력 1979. 11 「조국전선」 중앙위 의장
1980. 10 당 중앙위 위원
199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1997. 12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1998. 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여원구(呂元九)

- 현 직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조국전선」 중앙위 공동의장,
「법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 출 생 1928. 11. 5 서울
- 학 력 모스크바 대학
- 회담경력 2000. 6 남북정상회담시 공항영접 등 참석
- 주요경력 1989. 1 교포사업총국 부국장
1998. 2 「법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1998. 4 「조국전선」 중앙위 공동의장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1998. 9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장철(張澈)

- 현 직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당 중앙위 위원,
문학예술총동맹 위원장,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장,
조선 김정인화연맹 위원장

- 출 생 1926. 3. 1 경북 의성
- 학 력 일본 명치대학 정경학부
- 주요경력 1986. 5 정무원 문화예술부 부장
1988. 3 당 중앙위 위원(보선)
1989. 8 「조평통」 부위원장
1990. 5 정무원 부총리 겸 문화예술부 부장
1994. 12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 위원장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1998. 9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1998. 11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위원장

홍성남(洪成南)

- 현 직 내각 총리,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 위원
- 출 생 1929. 10. 2 평북 정주
- 학 력 김일성 종합대학
체코 프라하공대(기계공학 전공)
- 주요경력 1985. 9 정무원 국가계획위 부위원장
1986. 2 정무원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 위원장
1986. 12 당 정치국 위원, 중앙인민위 위원,
정무원 제1부총리
1989. 11 당 정치국 후보위원

- 1990. 5 정무원 부총리
- 1997. 2 정무원 총리대리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내각 총리

곽범기(郭範基)

· 현 직 내각 부총리, 당 중앙위 후보위원

- 주요경력 1991. 1 기계공업부 제1부부장
- 1993. 2 기계공업부 부장
- 1993. 12 당 중앙위 후보위원
- 1996. 4 경제대표단 인솔 나이지리아 방문
- 1998. 7 나이지리아 방문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내각 부총리

조창덕(趙昌德)

· 현 직 내각 부총리,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위원장,
당 중앙위 후보위원

- 주요경력 1969. 광업성 부상
- 1976. 9 광업위원회 위원장
- 1980. 10 당 중앙위 위원
- 1986. 12 채취공업위원회 위원장
- 1994. 7 당 중앙위 후보위원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내각 부총리
- 1999. 4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위원장

이광근

- 현 직 무역상
- 출 생 1955
- 학 력 김일성 종합대학
- 주요경력 1977. 외무성 근무
(시기미상) 종합설비 수출입회사 사장
2000. 12 무역상

김병률(金炳律)

- 현 직 중앙재판소장, 당 중앙위 위원
- 출 생 1926. 평북
- 학 력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 종합대학
- 주요경력 6.25당시 김일성 호위무관
1969. 11 평북도당 책임비서
1970. 11 당 중앙위 위원
1974. 9 평안북도 인민위원장
1986. 12 중앙인민위 위원
1994. 1 호위사령부 정치위원
1995. 10 인민군 대장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1998. 9 중앙재판소장,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

김영일

· 현 직 육해운상

- 주요경력 1995. 11 해운부 부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육해운상

김용삼

· 현 직 철도상

- 주요경력 19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 대의원
- 19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 대의원
- 1987. 3 북부철도 총국장
- 1988. 9 개천철도국 총국장
- 1998. 9 철도상

박명철(朴明哲)

· 현 직 내각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당 중앙위 후보위원

· 출 생 1941. 9. 15 평북 의주

- 주요경력 1991. 5 조선축구협회 부위원장
- 1992. 12 당 중앙위 후보위원
- 1992. 12 국가체육위원장, 조선바둑협회장
- 1993. 4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체육상
- 1999. 11 내각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백남순:일명 백남준

- 현 직 외무상
- 출 생 1929. 3. 13 경기 수원
- 학 력 김일성 종합대학
- 회담경력 1972. 8 적십자회담 자문위원(1-7차)
- 1989. 2 고위급예비회담 북측단장(1-8차)
- 1990. 9 고위급회담 대표(1-8차)
- 1992. 3 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원장
- 1994. 6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 대표
- 주요경력 1974. 4 폴란드 주재 대사
- 1985. 5 조선기자동맹 중앙위 부위원장
- 1991. 1 「조평통」 서기국장,
「법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 1992. 1 조선반핵평화위 부위원장
- 1996. 1 「조국진신」 서기국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외무상

백학림(白鶴林)

- 현 직 인민보안상, 인민군 차수, 국방위 위원.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 위원,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장

· 출 생 1918. 평남 평원

· 학 력 소련 군사아카데미

· 주요경력 1978. 8 인민무력부 부부장

1980. 10 당 중앙위 위원, 정치국 위원, 군사위 위원

1985. 4 인민군 대장

1985. 10 당 정치국 위원 해임,

정무원 사회안전부 부장

1992. 4 인민군 차수, 공화국 2중영웅 칭호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1998. 9 국방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장

2000. 4 인민보안상

오광홍

· 현 직 전기석탄공업상

· 회담경력 2000. 1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대표

2001. 2 남북진력실무협의회 북측 대표단 단장

· 주요경력 1999. 9 전기석탄공업성 부상

2002. 4 전기석탄공업상

김창식

· 현 직 농업상

- 주요경력 1978. 11 남포시 행정위 사무장
- 1988. 2 황남도 행정경제위원장
- 1997~1998 농업위원회 제1부위원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2001. 3 농업상

최영림 (崔英林)

- 현 직 중앙검찰소장,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 위원
- 출 생 1929. 양강도
- 학 력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 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 주요경력 1984. 2 정무원 제1부총리
- 1985. 10 당 정치국 위원, 제1부총리 해임
- 1990. 5 당 정치국 후보위원,
정무원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 위원장
- 1992. 12 정무원 부총리 겸 금속공업부 부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중앙검찰소장,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

조명록 (趙明錄)

- 현 직 인민군 총정치국장, 인민군 차수, 국방위 제1부위원장,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 출 생 1930. 만주 연길
- 학 력 만주 비행학교, 소련 공군대학, 중앙당학교

- 주요경력 1980. 10 당 중앙위 위원, 군사위 위원
- 1992. 4 인민군 대장
- 1995. 10 인민군 차수
- 1995. 10 인민군 총정치국 국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영춘(金英春)

- 현 직 인민군 총참모장, 인민군 차수, 국방위 위원,
당 중앙위 위원
- 출 생 1936.
- 학 력 만경대혁명학원
- 주요경력 1986. 12 당 중앙위 위원
- 1992. 4 인민군 대장
- 1995. 10 인민군 차수
- 1995. 10 인민군 총참모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국방위원회 위원

김일철(金鎰喆)

- 현 직 인민무력상, 인민군 차수, 국방위 부위원장,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 출 생 1933. 평양
- 학 력 해군대학, 소련해군대학

- 회담경력 2000. 9 남북국방장관회담 북측대표
- 주요경력 1985. 5 인민군 상장
1992. 4 인민군 대장
1997. 4 인민군 차수,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1998. 9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인민무력상
2000. 9 인민무력부장

이을설(李乙雪)

- 현 직 호위사령관, 인민군 원수, 국방위 위원,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 출 생 1921. 함북 성진
- 학 력 소련군사아카데미
- 주요경력 1975. 3 함경남도당 위원장
1980. 10 당 중앙위 위원, 군사위 위원
1982. 10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1983. 8 평양방어사령부 사령관
1984. 8 호위총국 총국장
1990. 5 국방위원회 위원
1995. 10 인민군 원수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1998. 9 국방위원회 위원

김철만(金鐵萬)

- 현 직 제2경제위원장, 국방위 위원,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 출 생 1918. 평남
- 주요경력 1965. 1 인민군 제2군단장
1968. 2 인민군 상장, 인민군 부총참모장
1970. 7 인민군 제1부총참모장
1980. 10 당 중앙위 위원, 정치국 후보위원, 당중앙군사위 위원
1989. 인민군 대장, 군수동원총국장
1989. 12 제2경제위원장
1990. 5 당 정치국 후보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회 대의원
1998. 9 국방위원회 위원

박기서(朴基瑞)

- 현 직 평양방어사령관, 인민군 차수,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 출 생 1929.
- 학 력 소련군사아카데미
- 주요경력 1986. 2 당 중앙위 위원(보선)
1989. 11 인민군 상장
1992. 4 인민군 대장, 김일성훈장 수훈
1995. 3 당 중앙군사위 위원

1996. 10 평양방어사령관

1997. 4 인민군 차수

박재경

· 현 직 인민무력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인민군 대장,
당 중앙위 후보위원

· 출 생 1933. 6. 10 함북

· 주요경력 1985. 2 총정치국 선전부장(인민군 소장)

1993. 12 당 중앙위 후보위원(보선)

1994. 6 인민군 상장

1994. 9 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1995. 8 당 중앙위 후보위원

1997. 2 인민군 대장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현철해(玄哲海)

· 현 직 인민무력성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인민군 대장,
당 중앙위 위원

· 출 생 1934. 8

· 학 력 만경대혁명학원, 루마니아 유학

· 주요경력 1968.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인민군 소장

1986. 인민군 중장, 인민무력부 후방총국장

1992. 4 인민군 상장

- 1993. 12 당 중앙위 위원
- 1995. 10 인민군 대장,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이명수(李明秀)

- 현 직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인민군 대장
- 주요경력 1980. 11 혁명승리기념관 관장
- 1992. 4 인민군 중장
- 1993. 12 3군단장
- 1995. 10 인민군 상장
- 1996. 11 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장모장
- 1997. 4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2000. 10 인민군 대장

원응희(元應熙)

- 현 직 보위사령관, 인민군 대장, 당 중앙위 위원
- 출 생 1939.
- 주요경력 1988. 3 당 중앙위 후보위원
- 1990. 공군사령부 정치위원
- 1990. 인민무력부 보위국장
- 1991. 12 당 중앙위 위원, 인민군 상장
- 1992.- 93. 인민군 총참모부 보위국장
- 1994. 7 인민군 대장

- 1995. 12 보위사령관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김두남(金斗南)

- 현 직 금수산기념궁전 관장, 인민군 대장, 당 중앙위 위원
- 출 생 1930. 평양
- 학 력 만경대혁명학원, 강건군관학교, 소련군사아카데미학원
- 주요경력 1970. 11 당 중앙검사위 위원
1980. 10 당 중앙위 위원, 군사위 위원
1982. 8 당 정치국 후보위원
1982. 10 당 중앙위 군사부 부장
1985. 4 인민군 대장, 김일성 군사보좌관
1994. 7 김정일 군사보좌관
1996. 3 금수산기념궁전 관장

오극렬(吳克列)

- 현 직 당 작진부 부장, 당 중앙위 위원, 인민군 대장
- 출 생 1931. 중국 길림성
- 학 력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소련 프룬제군사대학
- 주요경력 1977. 11 최고인민회의 제6기 대의원
1979. 9 당 정치국 후보위원, 인민군 총참모장

- 1980. 10 당 중앙위 위원, 정치국 위원,
군사위 위원
- 1982. 4 중앙인민위 위원, 김일성훈장 수훈
- 1985. 4 인민군 대장
- 1988. 4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해임
- 1989. 7 당 중앙위 작전부 부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강영섭(康永燮)

- 현 직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 위원장,
조선종교인협의회 부회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위원
- 출 생 1931. 10. 15 평양(평남 대동 선)
- 학 력 레닌그라드종합대학
- 회담경력 2000. 6 남북정상회담시 환영만찬 행사 등 참석
- 주요경력 1989. 2 조선기독교연맹 중앙위 위원장
1989. 5 조선종교인협의회 부회장
19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1990. 5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 위원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1998. 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김영성

- 현 직 내각참사, 조핑동 서기국 부국장.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아태평화위 참사

· 출 생 1944.

· 학 력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어문학과

· 회담경력 1998. 3 남북직접자 실무대표접촉 대표(북경) 등
2000. 5 남북정상회담 실무접촉 북측단장
(제1 - 5차)
2001. 2 방북단 유종근 전북지사와 면담
2001. 9~11 제5 - 6차 남북장관급회담 단장

· 주요경력 1992. 5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수행
1992. 5 남북경제공동위 위원
1992. 7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제6-7차)
1992. 9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기간중 교류협력
분과위원장간 접촉 대표
1999. 8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1999. 10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1999. 11 「아·태평화위」 참사

박태호: 일명 박태화

· 현 직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선사,
조선종교인협회 부회장,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 출 생 1919. 10. 15 함북

· 주요경력 1979. 9 불교도연맹 위원장

- 1989. 5 조선종교인협의회 부위원장
- 1990. 5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심의위 위원
- 1991. 1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
- 1991. 7 조-일 우호친선협회 부회장
- 1993. 8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송호경(宋虎鼎)

- 현 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 부위원장.
북-일 우호친선협회 회장, 당 중앙위 부부장
- 출 생 1941. 2. 3 평남
- 학 력 김일성 종합대학 외문학부
- 회담경력 2000. 3 북경 비공개집총 북측단장
2000. 3 방북한 김한길 문화부장관과 회담,
정주영 진 현대그룹 명회회장 조문단으
로 서울 방문
2000. 6 남북정상회담시 환영만찬 등 참석
2001. 4 방북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평양
공항 도착시 마중
- 주요경력 1982. 6 유엔식량기구(FAO) 상임대표
1992. 8 외교부 부부장 해임, 당 국제부 부부장
1994. 1 정무원 외교부 부부장
1996. 5 당 중앙위 국제부 부부장
1996. 9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1997. 북-일 우호친선협회 회장

안경호: 일명 안병수

- 현 직 「조평통」 서기국장, 「범민련」 북측 본부 부의장
- 출 생 1930. 1. 18 강원
- 학 력 김일성 종합대학, 철학박사
- 회담경력 1973. 12 남북조절위 제1-9차 부위원장회의 수행인
1990. 9 고위급회담 대표(1-8차) 대변인
1988. 8 국회회담 준비집측 대표
1994. 6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부총리급
예비집측 대표
2000. 6 남북정상회담시 환영만찬 등 참석
- 주요경력 19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1990. 5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 위원
1990. 7 콘크리트장벽제거 남북자유내왕 및 진면
개방을 위한 공동추진위 북측 부위원장
1991. 1 「조평통」 부위원장
1995. 8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1999. 4 「조평통」 서기국장
2000. 11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

양만길

- 현 직 평양시 인민위원장
- 주요경력 1990. 2 국가계획위원회 행정조직국장
1993. 3 황북도 행정경제위원장

- 1994. 5 황북도 행정경제위원장 해임
- 1996. 2 평양시 행정경제위원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유미영 (柳美英)

- 현 직 천도교 청우당 위원장,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 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장
- 출 생 1921. 1. 7 서울
- 회담경력 2000. 6 남북정상회담시 남북여성분야 협력 간담회 참석
- 2000. 8 제1차 남북이산가족상봉단 교환행사시 북측단장으로 서울 방문
- 주요경력 1990. 3 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고문
- 1991. 4 「범민련」 북측 중앙위원
- 1993. 1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인
- 1994. 1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
- 1995. 8 조국통일상 수상
- 1995. 10 개천절 기념 「단군제」 진행
- 1997. 9 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장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장웅 (張雄)

- 현 직 내각 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
-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IOC 위원

· 출 생 1938. 7. 5 평양

- 회담경력 1989. 3 북경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체육회담 대표,
1990.11 국제대회 단일팀 문제관련
체육회담(1~4차) 대표
1991. 2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위원장
2000. 6 남북정상회담시 환영만찬 행사 등 참석

- 주요경력 1976. 7 북한선수단 통역원으로
제21회 몬트리올올림픽 참가
1981. 7 조선 올림픽위원회 사무차장
1985. 6 조선 올림픽위원회 서기장
1996. 7 IOC 위원
1997. 1 국가체육위원회 대외사업국장
1998. 4 체육성 부상,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언 (張在彦): 일명 장재철

- 현 직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종교인협회 회장, 「법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 회담경력 1996. 2 남북 종교인 북경회의 참석
2000. 1 제2차 이산가족방문단 단장
- 주요경력 1989. 1 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1989. 3 조선종교인협회 부회장
1991. 1 「법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
1991. 7 조·일 우호친선협회 부회장

- 1992. 4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
- 1994. 9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 1994. 12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 위원
- 19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1998. 12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순희

- 현 직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중앙위원회 위원장
- 주요경력 2000.10 여맹위원장(시기미상)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정운업

- 현 직 민족경제협력연합회 회장
- 출 생 1941. 11. 28 평남 회창
- 학 력 김책 공대
- 회담경력 2000. 6 남북정상회담시 남북경제인접촉행사
등 참석
2000. 9~11 제1, 2차 남북 경협실무접촉 단장
- 주요경력 1989. 10 평양기계상사 총사장
1991. 2 삼천리총회사 총사장
1995. 3 개선 무역총회사 총사장
1998. 6 민족경제협력연합회 회장

북한 주요기구 등 영문표기

행정구역

평양특별시 : Pyongyang Municipality

남포직할시 : Nampo Municipality

개성직할시 : Kaesong Municipality

나선직할시 : Rason Municipality

평안남도 : Phyongan namdo

평안북도 : Phyongan bukdo

자 강 도 : Jagangdo

양 강 도 : Ryanggangdo

황해남도 : Hwanghae namdo

황해북도 : Hwanghae bukdo

함경남도 : Hamgyong namdo

함경북도 : Hamgyong bukdo

강 원 도 : Kangwondo

국방위원회

인 민 무 력 부 : Ministry of the People's Armed Forces

국가안전보위부 : Ministry(Agency) for National Security

조선노동당

당대회 : Congress of the Party

당대표자회 : Conference of Party Delegates

중앙위원회 : Central Committee

중앙감사위원회 : Central Auditing Committee

정치국 : Politbureau

비서국 : Secretariat

검열위원회 : Auditing Committee

중앙군사위원회 : Central Military Committee

시 · 도 당위원회 : Municipal Provincial Party's Commission

조선노동당 전문부서

조직지도부 : Organization and Guidance Department

선전선동부 : Propaganda and Agitation Department

간부부 : Cadre Department

국제부 : International Department

군사부 : Military Department
 민방위부 : Civil Defense Department
 통일전선부 : United Front Department
 대외연락부 : International Liaison Department
 35호실 : Room No. 35
 작전부 : Operations Department
 군수공업부 : Military Equipment and Industry Department
 경제정책검열부 : Economic Policy Inspection Department
 농업정책검열부 : Agricultural Policy Inspection Department
 과학교육부 : Science and Education Department
 근로단체부 : Working People's Organization Department
 재정경제부 : Finance and Accounting Department
 38호실 : Room No. 38
 39호실 : Room No. 39
 당역사연구소 : Party's History Institute
 문서정리실 : Document Archive Room
 신소실 : Complaint Room
 총무부 : General Affairs Department

내각

외무성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인민보안성 :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국가계획위원회 :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전기석탄공업성 : Ministry of Power and Coal Industries
 채취공업성 : Ministry of Extractive Industries
 전자공업성 : Ministry of Electronic Industries
 금속기계공업성 : Ministry of Metal and Machine-
 Building Industries
 건설건재공업성 :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Building-
 Materials Industries
 철도성 : Ministry of Railways
 육해운성 : Ministry of Land and Marine Transport
 농업성 : Ministry of Agriculture
 화학공업성 : Ministry of Chemical Industry
 경공업성 : Ministry of Light Industry
 무역성 : Ministry of Foreign Trade
 임업성 : Ministry of Forestry

수산성 : Ministry of Fisheries
 도시경영성 : Ministry of Municipal Administration
 국토환경보호성 : Ministry of Land Environment Protection
 국가건설감독성 : Ministry of State Construction Control
 상업성 : Ministry of Commerce
 수매양정성 : Ministry of Procurement and Food Administration
 교육성 : Ministry of Education
 체신성 : 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문화성 : Ministry of Culture
 재정성 : Ministry of Finance
 노동성 : Ministry of Labour
 보건성 : Ministry of Public Health
 체육지도위원회 : Physical Culture and Sports Education
 Commision
 국가검열성 : Ministry of State Inspection
 과학원 : Academy of Sciences
 중앙은행 : Central Bank
 중앙통계국 : Central Statistic Bureau
 사무국 : Secretariat

입법 · 사법기관

최고인민회의 : Supreme People's Assembly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Supreme People's Assembly Presidium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 Deputy Credentials Committee
 법제위원회 : Legislation Committee
 예산위원회 : Budget Committee
 중앙 검찰소 : Central Procurator's Office
 특별 검찰소 : Special Procurator's Office
 중앙 재판소 : Central Court
 특별 재판소 : Special Court

주요기구 · 단체

대남 기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 Democratic Front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 Committee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한국민족민주전선(민민전) : National Democratic Front of South
Korea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 National Alliance for the Country's
Reunification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 National Reconciliation Council
단군민족통일협의회 : The Consultative Council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Tankun Nation

대외단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원회) :
Korean Asia-Pacific Peace Committee
조선대외문화연락위원회 : Korean Cultural Liasion Committee
with Foreign Countries

경제단체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Cooperation
민족경제협력위원회 : 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Federation

주요 용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주체사상 : Juche idea : Juche - Sasang: Ideology of self - reliance
국방위원장 : Chairman of DPRK National Defence Committee
(조선노동당) 총비서 : General Secretary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주석 : President
수령 : President, Leader
강성대국 : power country: strong country

※ 본 영문표기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공식문건을 기초로 한 것이나 일부는 비공식
번역문임.

메모

메모

메모

메모

북한수첩

인쇄일 2002년 6월
발행일 2002년 6월
발행처 통일부 정보분석국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Tel. 3703-2348 Fax. 3703-2435
<http://www.unikorea.go.kr>

디자인·인쇄 오성사 Tel. 2266-0795